

第18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5.6.27. ~ 7.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63
II.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65
III.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73
IV.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79
V. 부 록	
1. 의사일정안	385
2.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87
3.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91
4.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95
5.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401
6.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13
VI. 별 책 부 록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2.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8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회)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4.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 6

월 24일까지 계획되었던 제1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 22일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개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금번 회기에 횡수를 변경하여 긴급으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갑자

[제181회-제1차 본회의]

기 타계하신 데 대하여 1만 7천여 교육가족과 더불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서는 평생을 인재양성에 헌신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아오시면서 교육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셨고, 한평생을 청렴과 봉사, 성실로 살아오신 훌륭한 분이기에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충북교육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11시 03분)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2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와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재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6월 22일 공고 제2005-7호로 긴급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8일과 6월 30일은 소위원회 활동 및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말일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시고, 7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

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

4.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경계획안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81회-제1차 본회의]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1,858억 3,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210억원으로 648억 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75억 1,600만원은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909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1조 1,858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3.1%인 1,556억 7,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6.9%인 1조 30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67억 1,400만원으로 92.1%인 1조 1,2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475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인 481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475억 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35건에 358억 8,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5건, 116억 3,000만원입니다.

또 총 집행액 1조 1,210억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141억 2,000만원, 물건비 350억 8,700만원, 경상이전비 3,105억 2,4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68억 8,500만원, 보전지출 24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은 재산임대료 3,500만원, 교원단체사무실 및 원어민교사 전세권 2억 6,100만원, 수업료 200만원, 소송비용 1,000만원, 급여청구 300만원, 대여학자금 383억 4,300만원으로 총 386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207억 1,9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 통·폐합 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2,943억 5,800만원, 보존재산 200만원, 잡종재산 399억 4,100만원으로 총 2조 3,34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 793점에 1,07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비 973억 200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42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교한 산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와 2005년 3월 개교한 금천

중학교 등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227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124억 4,500만원, 학교 증·개축 시설에 320억원, 시설대수선비에 44억 1,200만원, 환경개선 시설에 465억 5,5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164억 3,2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에 10억 700만원,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55억 2,200만원 등 총 1,411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2)
(끝에 실음)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첨 1)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첨 2)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3억 7,700만원 중 지출은 폭설피해 외 3건으로 2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4일, 5일 양일간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암초등학교 외 33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20억 4,700만원, 2004년도 6

[제181회-제1차 본회의]

월 19일부터 21일 태풍 디엔무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공고 외 1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2억 6,500만원, 2004년 6월 24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증평정보고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3억 1,900만원, 2004년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포초등학교 외 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8,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 사업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 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으로는 학교신설

과 개축, 다목적 교실 증축으로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5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 733억 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72억 400만원씩 20년간 1,440억 8,000여 만원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3)
(끝에 실음)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3)

마지막으로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4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제천 청풍중학교 재산으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 자체 활용을 검토하는 중이었으나 제천시와 자매결연한 서울 동대문구청이 직원 및 주민들을 위한 수련공

간으로 사용하고자 매입 요청이 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매각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이농현상과 행정도시 건설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내 북부지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특히 BTL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관계 규정과 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BTL 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거양과 다목적 교실의 확충, 그리고 2007년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

[제181회-제1차 본회의]

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
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제2회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
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고규강,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2)
-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3)
- ▶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4)

※ 별 책 부 록

-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2)
-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9일 (수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당면 업무 추진 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송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제181회-제2차 본회의]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2,167억 1,43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909억 7,503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징수결정 대비 99.5%인 1조 1,858억 3,582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1,592억 380만 4,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5억 1,054만 2,000원이 포함된 1조 2,167억 1,43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1%인 1조 1,210억 31만 5,000원으로 648억 3,551만 3,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3.9%인 475억 1,566만 3,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인 481억 9,836만 6,000원으로 불용액의 대

부분은 시설비, 급여관리, 예비비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폭설피해 재해 복구비로 23억 940만원, 태풍 디엔무 피해 재해 복구비로 3억 100만원, 화재피해 재해 복구비로 3억 7,250만원, 집중호우 재해 복구비로 1억 750만원, 총 30억 9,040만원을 지출 결정된 것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86억 5,418만 5,000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07억 1,878만 1,000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폐합 지원 및 학교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343억 89만원이며, 물품의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만 793점에 1,071억 6,6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3월 4일, 5일 양일간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암초등학교 외 33개교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20억 4,680만 8,000원,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 태풍 디엔무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공고 외 1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2억 6,535만 2,000원, 2004년 6월 24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증평정보고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3억 1,848만 8,000원, 2004년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포초등학교 외 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8,286만 5,000원 등 총 27억 1,351만 3,00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등 각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적기에 재해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50% 불용액이 71건, 100% 불용액 26건이 발생한 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100%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부담수입 결손액 364억 8,158만원의 발생으로 예산절감 운영이 불가피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세수 부족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국가부담수입 감소로 다소 어려운 교육재정 운영이 예상되나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제181회-제2차 본회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참 조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별첨 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7월 1일 (금요일) 10시 59분

議事日程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 59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의사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함)

이번 인사에서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관

리국장으로 전보된 박경석 과장 후임으로 총무 인사담당에서 승진하여 의사과장으로 발령된 서광범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노재전 교육국장님께서는 CEO 중·고교장 교육과정 연수 강의로 연준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중등 임용고시 관계관 회의 참석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총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6개교의 학교신설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8개교의 다목적 교실 증축과 중학교 1개교의 다목적 교실 개축 등 총 15개교로 사업비는 학교신설이 609억 3,900만원, 다목적 교실 증축이 111억 1,600만원, 다목적 교실 개축이 12억 7,600만원, 총 733억 3,100만원이며, 연간 상환소요액 중 시설임대료는 학교신설이 51억 59만 4,000원, 다목적 교실 증축이 9억 3,041만원, 다목적 교실 개축이 1억 680만 1,000원으로 총 61억 3,780만 5,000원입니다.

운영비용으로는 학교신설이 10억 6,643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 완공 후 20년간 채무부담행위액은 학교신설이 1,233억 4,054만원, 다목적 교실 증축이 186억 820만원, 다목적 교실 개축이 21억 3,602만원 등 총 1,440억 8,47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 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편익 증진, 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위사업 선정,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검토와 상환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시·군별 지역간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투자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안 또는 교육위원회 심의 전에 외부로 누출될 경우 의안심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참 조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제181회-제3차 본회의]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2.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6월 3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처분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확인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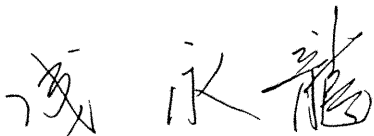
※ 부 록


-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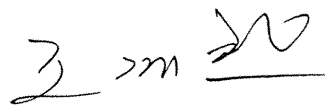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7.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헌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8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6. 27. ~ 7. 1.(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월 27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6. 27. ~ 7. 1.(5일간) 2. 2004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6월 28일(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6월 29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2004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6월 30일(목)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 회
7월 1일(금) (11:00)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 号 / ~ /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6월 10일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81 ~ 1
----------	---------

제출연월일 : 2005. 6.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 결산액 : 1,185,835,828,140원
- 세출 결산액 : 1,121,000,315,310원
- 세계잉여금 : 64,835,512,830원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7,515,663,9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19,848,930원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 : 붙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고사항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붙임

2.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이유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4건
- 지출결정액 : 3,090,400,000원
- 지출액 : 2,713,513,980원
 - 지출액 : 2,486,146,350원
 - 다음연도이월액 : 227,367,630원
- 잔액 : 376,886,020원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004. 3. 4.~3. 5.)	2004. 3.11.	2,309,400,000	2,046,808,010	262,591,990	우암초외 33교
태풍『디엔무』피해 재해복구비 (2004.6.19.~6.21.)	2004. 6.28.	301,000,000	265,352,500	35,647,500	충북공고외 12교
화재피해 재해복구비 (2004. 6.24.)	2004. 6.28. /7.15.	372,500,000	318,488,000	54,012,000	증평정보고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004.7.16.~7.17.)	2004. 7.29.	107,500,000	82,865,470	24,634,530	옥포초외 2교
계		3,090,400,000	2,713,513,980	376,886,020	

2004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별첨

2004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잔 액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초등 학교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157,600,000	152,321,800	0	5,278,200
					사 학 지원비	62,000,000	52,578,000	0	9,422,000
	중학 교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119,600,000	112,679,000	0	6,921,000
					학 교 회 계 전 출 금	250,000,000	249,981,530	0	18,470
					사 학 지원비	279,600,000	215,623,000	0	63,977,000
	고등 학교	실업 교육 지원	실업계 고 교내 실화 지원	교 육 사업비	사 학 지원비	1,477,300,000	1,257,075,180	0	220,224,820
					시 설 부 대 비	5,100,000	5,100,000	0	0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사업비	사 학 지원비	279,600,000	215,623,000	0	63,977,000	
				시 설 부 대 비	5,100,000	5,100,000	0	0	
교육 행정	지역 교육 청	지역 교육 청 운영	지역교육 청시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139,400,000	112,701,470	0	26,698,530
		교육 지원 기관	지원기관 시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288,300,000	243,954,000	0	44,346,000
합 계						3,090,400,000	2,486,146,350	227,367,630	376,886,020

(별첨 3)

의안번호	제 181 ~ 2호
의결 연월일	2005. . . (제 회)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5. 6. 2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81~2
----------	-------

제출연월일 : 2005. 6.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안) : 별책

채무부담행위액조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행위 (추정)액 (20년간)	매년도상환계획(2007~2026년까지)			사업비(추정)	설명사항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계		
초등학교	장진초등학교신축	22,834,760	944,303	197,435	1,141,738	11,28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BTL)으로서 신설교 6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9교 등 추진 ○ 사업시행예정기간은 2005~2007년까지 ○ 채무부담행위액은 추정신정 금액으로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임대료는 물가상승률 4%, 수익률 5.5%,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임
	문의초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	1,879,900	93,995		93,995	1,123,000	
	동광초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	2,172,860	108,643		108,643	1,298,000	
	보광초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	1,879,900	93,995		93,995	1,123,000	
	계 (4교)	28,767,420	1,240,936	197,435	1,438,371	14,826,000	
	원현중학교신축	24,198,940	1,000,634	209,213	1,209,847	11,955,000	
중학교	장진중학교신축	16,908,500	699,230	146,195	845,425	8,354,000	
	가경중학교다목적교실증축	2,678,400	133,920		133,920	1,600,000	
	용문중학교다목적교실증축	2,092,500	104,625		104,625	1,250,000	
	진천여자중학교다목적교실증축	2,385,460	119,273		119,273	1,425,000	
	괴산중학교다목적교실개축	2,136,020	106,801		106,801	1,276,000	
	계 (6교)	50,397,820	2,164,483	355,408	2,519,891	25,860,000	
고등학교	송절고등학교신축	20,911,960	864,788	180,810	1,045,598	10,332,000	
	산남고등학교신축	20,911,960	864,788	180,810	1,045,598	10,332,000	
	양청고등학교신축	17,576,420	726,851	151,970	878,821	8,684,000	
	서원고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	2,906,060	145,303		145,303	1,736,000	
	진천고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	2,613,120	130,656		130,656	1,561,000	
	계 (5교)	64,919,520	2,732,386	513,590	3,245,976	32,645,000	
합 계		144,084,760	6,137,805	1,066,433	7,204,238	73,331,000	

(별첨 4)

의안번호	제 181 ~ 3 호
의 결 연 월 일	2005년 월 일 (제 회)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5년 6월 21 일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1~3
----------	-------

제출연월일 : 2005. 6.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처 분

(단위 : m², 천원)

기 관 명	처분 재산명	구 분	소재지번	수 량	대장금액
제 천 교 육 청	청풍중 폐교	토 지	청풍면 물태리 131-10 번지의 8필지	21,478	607,260
		건 물		1,977.7	233,441
		공작물		14종	105,475
		입목죽		112본	5,340
		합 계		23,455.7 14종/112주	951,516

3. 제안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처분 위치도 2부.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급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1	21,478.0	607,260	1	21,478.0	607,260
		건물			1	1,977.7	233,441	1	1,977.7	233,441
		기타			2	14종 / 112주	110,815	2	14종 / 112주	110,815
	4. 매각	토지			1	21,478.0	607,260	1	21,478.0	607,260
		건물			1	1,977.7	233,441	1	1,977.7	233,441
		기타			2	14종 / 112주	110,815	2	14종 / 112주	110,815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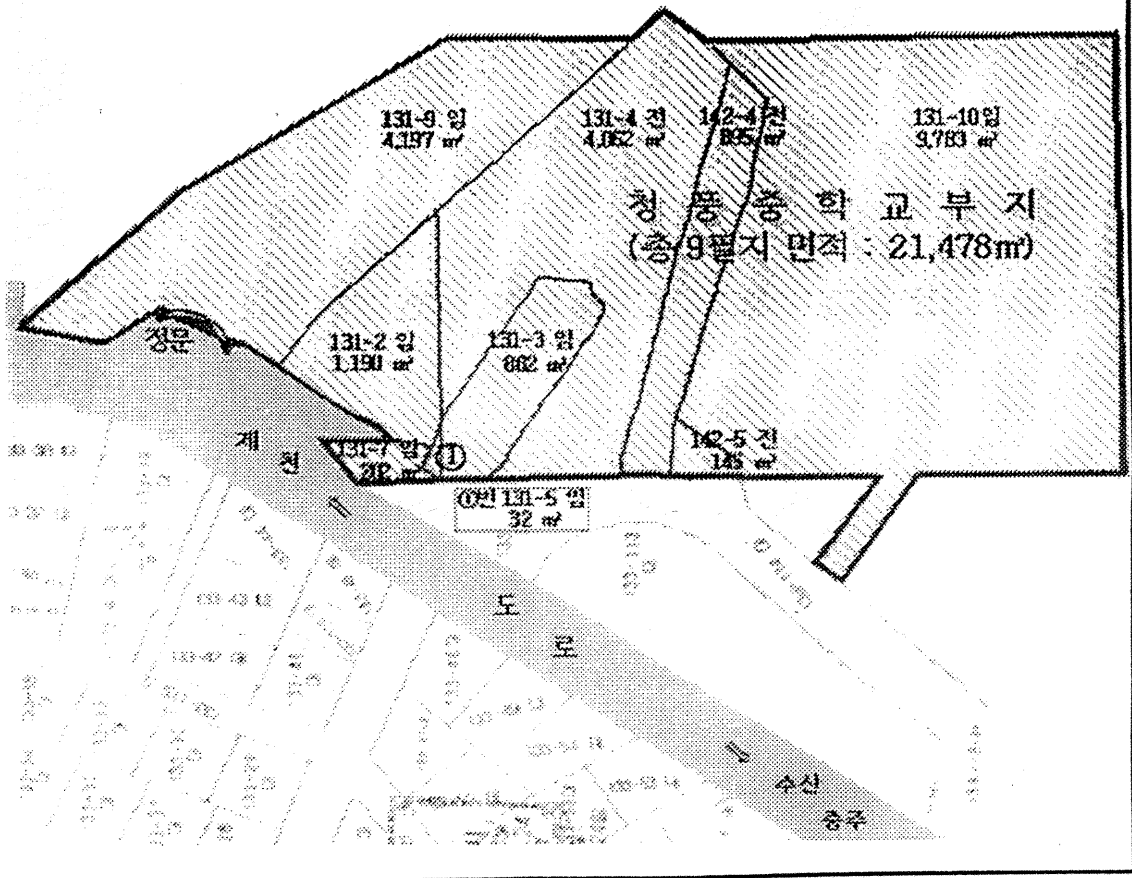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금 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 입 요 청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청 풍 중 교 폐	토지	제천시 청풍면 물대리 131-10 외8필지	21,478.0	607,260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매수 요청 ○ 지역주민 요구사항 	서울 동대문구청	도면1쪽
		건물		1,977.7	233,441				도면2쪽
		공작물		14종	105,475				
		입목축		112주	5,340				
		합계			95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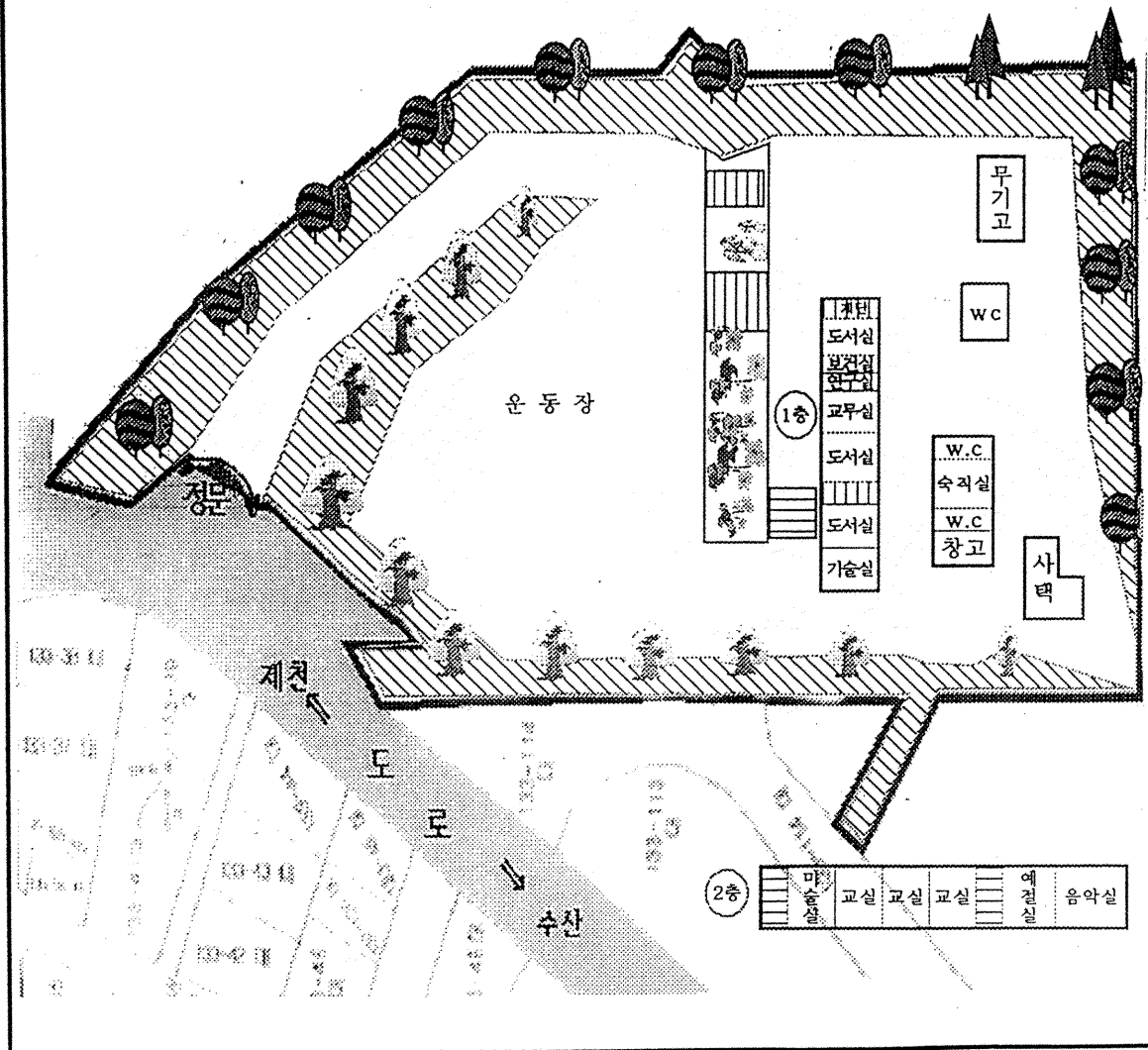
(1) 청풍중 폐교 토지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제천시 청풍면 울태리	131-2	전	1,190.0	33,915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매수 요청 ○ 지역주민 요구사항
	131-3	임야	882.0	25,137	
	131-4	전	4,062.0	115,767	
	131-5	임야	32.0	893	
	131-7	전	202.0	5,635	
	131-9	임야	4,197.0	117,096	
	131-10	임야	9,783.0	278,815	
	142-4	전	985.0	28,073	
	142-5	전	145.0	1,929	
계			21,478.0	607,260	



(2) 청풍중 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번호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제천시 청풍면 울태리 131-10	1	교사	철근슬	1984	1,571.0	186,648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매수 요청 ○ 지역주민 요구사항
	2	사택	적벽슬	1984	113.8	25,277	
	3	무기고	적벽슬	1984	31.5	3,009	
	4	숙직실	적벽슬	1984	180.9	13,337	
	5	화장실	적벽슬	1984	80.5	5,170	
계					1,977.7	233,441	



(별첨 5)

제181회 임시회

심사보고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 6. 2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7일)

○ 제2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 결산액 : 1,185,835,828천원

- 세출 결산액 : 1,121,000,315천원

- 세계 잉여금 : 64,835,513천원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7,515,66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19,849천원임.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1,159,203,804	1,216,714,346	1,185,835,828	1,121,000,315	64,835,513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16,714,346 천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185,835,82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1,121,000,31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64,835,513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7,515,664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17,319,849천원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17,319,849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35,885,663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1,630,000천원

(2)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1,216,714,346	1,190,975,031	1,185,835,828	8,048	5,131,155	97.4%	99.5%

200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1,190,975,03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5,835,828 천원이 수납되고 8,048천원의 불납결손과 5,131,155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4%, 징수결정액 대비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1,030,159,376천원(86.87%)
 - 자체수입 155,676,452천원(13.13%)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3.97% 낮아졌음.

(3)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1,159,203,804	57,510,542	1,216,714,346	1,121,000,315	47,515,663	48,198,366	92.1%	3.9%

2004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121,000,31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1%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7,515,66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48,198,36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6%인데,

○ 지출액 1,121,000,31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유치원 9,728,143천원(0.9%)
- 초등학교 162,505,694천원(14.5%)
- 중 학교 83,736,426천원(7.5%)
- 고등학교 106,443,473천원(9.5%)
- 특수학교 14,658,678천원(1.3%)
- 기타학교 147,566천원(0.0%)
- 평생교육 3,067,898천원(0.3%)
- 급여관리 622,055,514천원(55.5%)
- 복지·후생 62,745,604천원(5.6%)
- 교육위원회 433,702천원(0.0%)
- 교육청 16,066,344천원(1.4%)
- 지역교육청 8,381,309천원(0.7%)
- 교육지원기관 5,199,688천원(0.5%)
- 지방채상환 25,830,270천원(2.3%)

○ 다음연도 이월액 47,515,663천원의 관별 내용은,

- 초등학교 16,691,182천원(35.1%)
- 중 학교 11,273,009천원(23.7%)
- 고등학교 7,926,332천원(16.7%)
- 특수학교 3,501,200천원(7.4%)
- 교육청 517,940천원(1.1%)

- 지역교육청 359,257천원(0.8%)
 - 교육지원기관 7,246,742천원(15.3%)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48,198,366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치원 276,820천원(0.6%)
- 초등학교 4,891,753천원(10.1%)
- 중 학교 2,276,110천원(4.7%)
- 고등학교 3,048,267천원(6.3%)
- 특수학교 199,638천원(0.4%)
- 기타학교 1,952천원(0.0%)
- 평생교육 299,005천원(0.6%)
- 급여관리 19,650,073천원(40.8%)
- 복지·후생 349,144천원(0.7%)
- 교육위원회 20,342천원(0.0%)
- 교 육 청 1,350,788천원(2.8%)
- 지역교육청 710,561천원(1.5%)
- 교육지원기관 757,688천원(1.6%)
- 지방채상환 79,300천원(0.2%)
- 예비비 14,286,920천원(29.6%)

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3.9%로 '03년도 5.4%보다는 많이 낮아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 급여관리, 예비비임.

(4)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6	35,885,663	15	11,630,000	0	0	51	47,515,663	

2004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6건에 35,885,663천원, 사고이월 15건에 11,630,000천원, 총 51건에 47,515,66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건이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9,994,879천원이 감소하였음.

(5)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건 명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지출액	잔액	비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309,400	2,046,808	262,592	2004. 3.11
태풍 『디엔무』 피해 재해복구비	301,000	265,352	35,648	2004. 6.28
화재 피해 재해복구비	372,500	318,488	54,012	2004. 6.28 2004. 7.15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07,500	82,865	24,635	2004. 7.29
계	3,090,400	2,713,513	376,887	

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04년에 폭설피해, 태풍 “디엔무”피해, 화재피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비로, 금회 제18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임.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입대료	11,204	32,292	8,495	35,001	폐교 임대료 미납금
재매각대	456,000	0	456,000	0	
전세권	252,000	21,000	12,000	261,000	원어민교사 주택 전세금외 1
수업료	0	1,575	0	1,575	
구상권	296	0	296	0	
소송비용	0	9,709	0	9,709	3건의 소송비용
급여청구	3,310	0	0	3,310	급여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대여학자금	35,986,764	6,799,440	4,442,614	38,343,590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계	36,709,574	6,864,016	4,919,405	38,654,185	

채권은 2003년도말 36,709,574천원에서 2004년도중에 6,864,016천원이 발생하고 4,919,405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38,654,185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99.1%)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 채 무

(단위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고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45,102,783	0	24,384,002	20,718,781	0	재특용자금

채무는 2003년도말 45,102,783천원에서 2004년도중에 24,384,002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718,781천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통·폐합지원, 학교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재특용자금) 임.

(7)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2003년도말 현재액	2004년도 증 감		200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행정재산	2,182,517,196	144,408,638	32,567,487	2,294,358,347	
보존재산	0	1,896	0	1,896	
잡종재산	41,234,146	7,785,182	9,078,681	39,940,647	
합 계	2,223,751,342	152,195,716	41,646,168	2,334,300,890	

공유재산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0,549,548천원이 증가된 2,334,300,890천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2,182,517,196천원으로 2004년도에 144,408,638천원이 증가되고 32,567,487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의 현재액은 2,294,358,347천원이고,
- 보존재산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04년도에 1,896천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896천원 임.

- **잡종재산**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41,234,146천원으로, 2004년도에 7,785,182천원이 증가되고 9,078,681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39,940,647천원 임.

○ 물 품

(단위 : 천원)

2003년도말 현재액		2003년도 증 감				2004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9,210	100,403,459	2,755	13,014,713	1,172	6,251,727	20,793	107,166,445

물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793점에 107,166,445천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19,210점 100,403,459천원에 비하여 2004년도에 2,755점 13,014,713천원이 증가되고, 1,172점 6,251,727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제안이유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출건수 : 4건
- 지출결정액 : 3,090,400천원
- 지 출 액 : 2,713,513천원
 - 지출액 : 2,486,146천원
 - 다음연도이월액 : 227,367천원
- 잔 액 : 376,886천원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004. 3. 4~3. 5)	'04. 3. 11.	2,309,400	2,046,808	262,592	우암초외 33교
태풍 『디엔무』 피해 태풍 재해복구비 (2004. 6.19~6.21)	'04. 6. 28.	301,000	265,352	35,647	충북공고외 12교
화재피해 재해복구비 (2004. 6.24)	'04. 6. 28. '04. 7. 15.	372,500	318,488	54,012	증평정보고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004. 7.16~7.17)	'04. 7. 29.	107,500	82,865	24,635	옥포초외 2교
계		3,090,400	2,713,513	376,886	

3.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적기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50% 불용액이 71건, 100% 불용액이 26건이 발생한 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100%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요 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부담 수입 결손액 364억 8,158만원의 발생으로 예산 절감 운영이 불가피 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세수 부족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국가부담 수입 감소로 다소 어려운 교육재정 운영이 예상되나,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5.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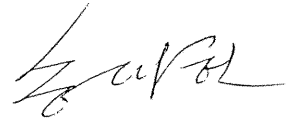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6. 29.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간사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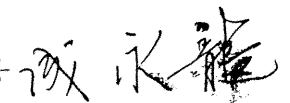


위원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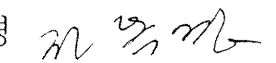
성영용



이상일



진옥경



(별첨 6)

제181회 임시회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 7.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7일)

○ 제2차 소위원회(2005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2005년도 총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체육관)증축	개 축	계	비고
학 교 수	6교	8교	1교	15교	
면 적	60,038m ²	8,376m ²	942m ²	69,356m ²	
사업비한도액	60,939	11,116	1,276	73,331	

나.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백만원)

세부현황	년도	사업비 (추정)	연간상환소요액(2007년~2026년)			채무부담 행위액 (20년간)	비고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계		
초·중·고등학교 신축(6교)	2005	60,939	5,101	1,066	6,167	123,341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8교)	2005	11,116	930	0	930	18,608	
중학교 다목적교실개축(1교)	2005	1,276	107	0	107	2,136	
합 계		73,331	6,138	1,066	7,204	144,085	

6.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추경예산안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여유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 편익 증진, 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단위 사업 선정,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검토와 상환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BTL)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시·군별 지역간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투자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안 또는 교육위원회 심의 전에 외부로 누출될 경우 의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언론 보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7. 1.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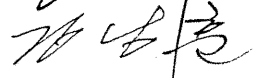
간사

이기수



위원

김남훈



성영용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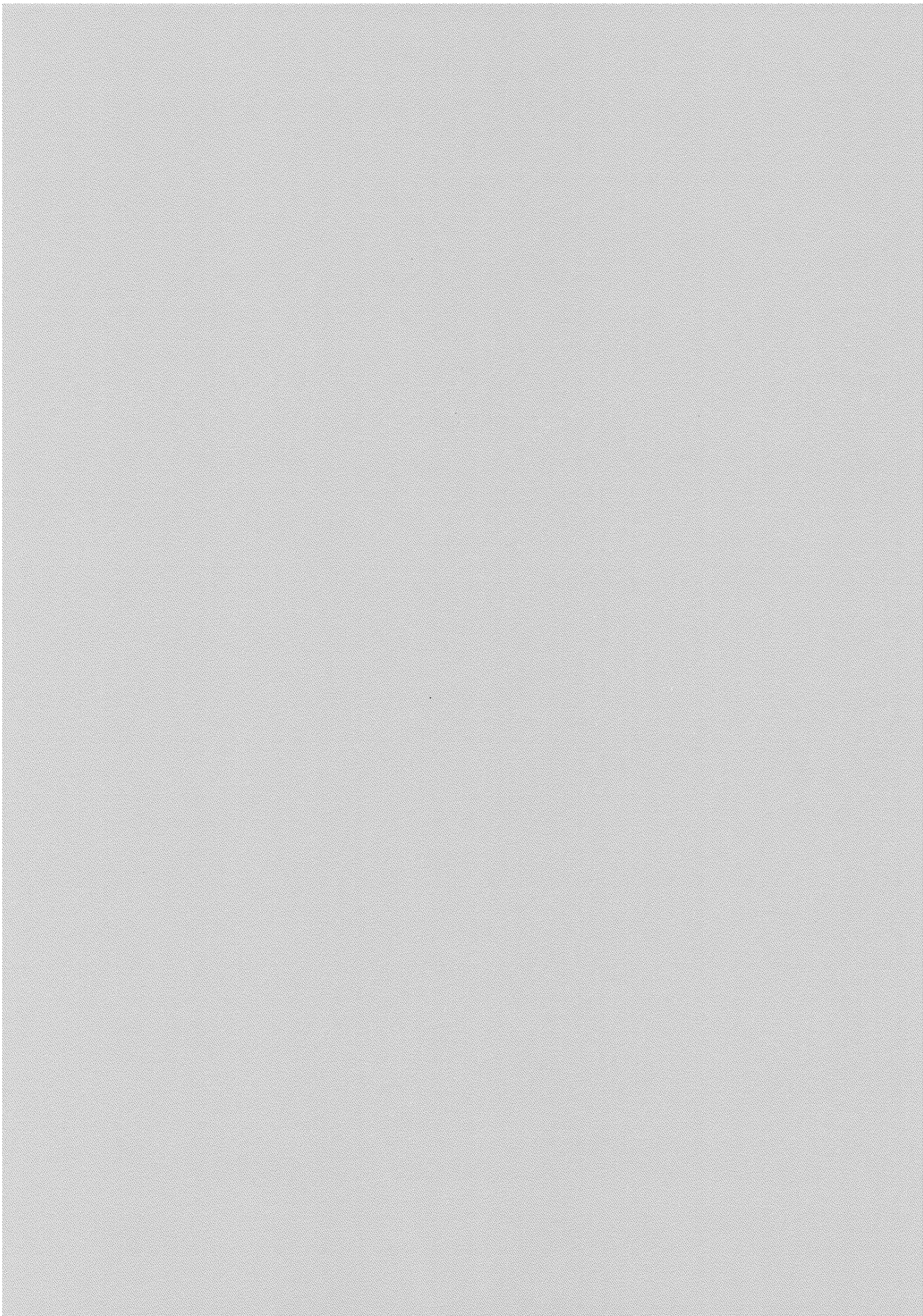


친옥경

第18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423
II.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427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495
2. 서면답변서	49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7일 (월요일) 11시 29분

議事日程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9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자리 앉으신 대로 안하셨는데 송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제가요,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성영용 위원님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 이기수 위원

내일 늦게 오신다고 그러네요.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알았습니다.

본인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우리 요번에 안건이 아마 예산이 BTL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31분)

● 위원장 송대현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기수 위원,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를 안하셨네요. 이기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 성영용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네, 이기수 위원님 간사로 추천 받았습니다.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대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송대현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요번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끔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32분)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토록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2
일간으로 하여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
월 28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4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2회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이기수,
위 원 성영용,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6월 28일 (화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4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
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안건별로 각각 보
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1. 2004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개요를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소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지금까지는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김남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본 위원장으로서 결산목적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결산목적은 한 회계연도 중 교육청의 재정활동 결과를 지역주민, 교육위원회, 시·도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및 그 결과에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라든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결사항 중에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 이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산이니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전개 조문과 목적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간에 두서너차례 우리가 과거에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도의회에 선정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아홉 분의 결산요원들이

전문가가 한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위원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결산분이거든요, 되풀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의례 절차로써 하나의 요식 행위로써 이 두꺼운 결산보고서를 받는 것이냐, 가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결산요원에 가담해서 그때서부터 참견이 되어 가지고 잘 집행됐는가 적정한가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0여 일간 했던 부분을 이 막대한 보고서에 담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요식 행위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아주 힐난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건 일과성에 그치고 말아요, 보고절차에 끝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그걸 반영한다든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서류를 들여보고 하셨던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2005년도 예산집행이라든가 2006년도 예산반영에

철저히 그걸 반영해서 오늘 이렇게 한 식구들이 모아서 뜻을 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려드립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김남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1조 2천여 억원이 넘는 그러한 방대한 교육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오늘 결산심의를 하게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폐교재산 대부분이 징수 소홀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이 폐교재산을 대여해 주고서 이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못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고 3,2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물건을 내가 임대료를 해 주고서 이 임대료를 받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징수하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산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임대료를 적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임대료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일정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계약자와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계약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결과가 생겨서 아마 재력이 상당히 없어서 부득이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2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걸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보증담보를 징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물론 집행청에서 임대료를 갖다가 달라고는 했을 테지만 이것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 있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아까 3,200만원이 2004년도 말까지 납부가 안됐었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 일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가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 현재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채납처분이라든

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전액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심사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문제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빼 놓은 행사부분에서 교육행사 부분에서 그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에서 99%에 이르는 불용액이 71건이 나왔고 100% 불용액이 26건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에 행정직 급여관리가 예산 자체가 하나도 집행 안 된 상태이고, 또는 초등교육과 학력신장지원 이런 부분이 쪽 해서 26건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사업을 갖다가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혀 집행을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어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불용액이 더 감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요, 공보담당관실에 불용액 100% 나온 사항은 당초에 사진자료 DB 구축하기 위한 요원을 1명을 임용을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도에 퇴직하는 관계로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 사항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

다.

그 다음 사항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첫째로 초등교육과 사항으로 결산서 132쪽에 특수학교 학력신장지원 관서운영비 32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특수학교 학력신장 관서운영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립특수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특수교육정보화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는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기자재 전시회를 시·도교육청에서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정보관련 업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특수학교 또 교실모형 이러한 전시회를 정보관련 업체가 주관하도록 전시회가 변경됨에 따라 불용액이 전액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결산서 152쪽에 나오는 중등교육과에 행정직 급여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100%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위한 일용직 사서보조원을 2003년 7월 1일부터 75명을 임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재계약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또 100%된 것 다시 1건 말씀드리면 결산서 176쪽에 교육정보화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구축 용역비 1,3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오디 자료편집 용역비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과 이 가상 스튜디오시스템 머추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구축으로 고품질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그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서비스할 예정이었는데 그 자료 개발이 중복됨으로써 방지코자 재편집 용역비를 불용시켰으며, 그 다목적멀티비전·동영상물 용역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홍보자료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 용역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님들 중심으로 자체 제작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액 불용액되는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부의 정책변경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상계획을 잘 수립해서 불용액이 전액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청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사업을 갖다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 요인이라 말씀하셨는

데,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청이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 보면 학력경시대회, 인사관리, 교단선진화 이런 것이 쪽 있는데 이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액이 100% 발생했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불용액 100% 발생한 것이 전체 금액 1억 4,951만 1,000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적으나 이것이 26건이라는 것이 사업을 안 해서 100%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취소된다든가 또는 어떤 당초에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다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요, 뭐 개중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의 어떤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교육청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할 적에 지역교육

청 분은 지역에서 일단 사업을 갖다가 확정해서 본 도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히 따지지 않았습니니다.

안왔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부분이 사용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부터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엄격히 심사를 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국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덜 왔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손실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보통교부금이 50억, 양여금이 315억 정도 덜 왔습니니다. 총 365억 정도가 덜 왔습니니다.

● 김남훈 위원

그 365억이 덜 옴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365억이라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당시

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받은 것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받은 것 없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왜 365억이라는 돈이 안오느냐 하는데서 여기서 질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에 예산에서 365억이라는 돈이 안왔는데 거기 교육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우리도 또 아무 대응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왜 365억이라는 돈을 안왔느냐 하는 데에서 교육부에 낸 공문은 있느냐 얘기에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공문으로는 없고 유선상으로만 독촉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네 지금 그렇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각 시·도가 똑같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 김남훈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예산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적당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중앙에서부터 안왔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전화로다가 왜 돈 안줍니까, 국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기에 합당한 대응조치를 해서 완전한 답변을 얻어서 놓는 것이 집행청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 했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 교부되어서 내려올 때 어떤 세금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내려 왔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 365억에 대한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국고 세금결손에 의해서 결손이 났기 때문에 자금을 갖다가 요번 추경예산에 기채를 했습니다. 국고로 보존되는 기채가 95억, 또 자체부담으로 그것만 기채로 했고 우리가 자체로 기채할 수 있는 것이 219억인데 그것은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긴급재정을 해서 그걸 갚아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김남훈 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결산서 만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처리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안해 갖고 생긴 불용액이 있고 또한 가지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물론 예비비를 몇 퍼센트 편성을 해야지 되느냐 기준에 묶여 갖고서 해마다 그렇게 편성하는 건지, 매년 보면 사실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갖고서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전체적인 불용액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총 예산에 예비비로 173억인가 편성해 갖고서 한 31억이나 요 정도 쓴 것 같고 140억 가까이 다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안해 갖고 불용액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생겼을 때는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갖고서 어느 사업에다가 다시 편성해 놓고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구완해서 교육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외에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갖고서 불용액의 퍼센트를 줄여주어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91년까지는 저희들이 1% 수준으로 예산

을 편성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까지는 0.5%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2004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대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적절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은 잘 아시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소유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유지시켜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 0.5%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유가 점차 줄어들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해서 어떤 적절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감사 이기수

그럼 2005년도 예산은 예비비 편성이

몇%가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당초 본 예산에서 한 1%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1차 추경하면서 한 0.5% 수준으로.

● 간사 이기수

당초는 1%에서 추경에서 0.5% 했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 간사 이기수

1조 2천억 예산이라고 하면 0.5%만 해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60억 가까이, 0.5%를 편성했을 경우에도 한 62억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금년에 예비비 사용이 거의 3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그렇게 본다면 그걸 자유롭게끔 예비비 편성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퍼센트를 낮춰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0.5%보다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달리 조기에 복구를 한다든가 긴급 지원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산상에 말입니다. 변경하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과다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가 부족했을 경우는 그거는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간사 이기수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어렵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의결을 거친다든가 도의회를 거친다든가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긴급 지원해 준다든가 할 경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사실 인건비 과다 편성도 불용액의 요인 중에 하나고 전혀 사업 안한 것도 그렇고 예비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예비비 편성의 퍼센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아주 대폭 줄여 갖고서

불용액이 과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지금 종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부터 들어온 예산이 한 때는 그걸 그냥 들어온 것을 지역교육청에다 나누어줘 갖고서 예산항목에 수입도 안잡고 결국은 세입도 안잡고 세출부분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금년 같으면 먼저 2004년도 예산에서는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문제 특히 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청원에서 팔린 소주에 대해서 1병에 얼마큼 해서 교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런 예산은 잡지 않고서 그대로 청주·청원교육청에 나누어주고서 세입에도 안잡고 세출도 안잡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로 같은데서 소주 1병 먹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소비량이 얼마로 해 갖고서 청주·청원학생들 교복지원비로 해 갖고서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던 예산을 지원해 준다가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 어떤 목적을 지정해줘서 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거 있다가 파악하기 어려우면 말입니다. 복지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진로주조라든지 이런데서 교복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에서 들어온 금액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산상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유인물로 해 주세요. 지금 바로는 안되더라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간사 이기수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연말에는 교육위원회 승인을 거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승인전 예산사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현황을 유인물을 주시고, 또 사용전 승인을 했다는지 그 예산을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집행은 했고 하지만 차후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것도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떤 재량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단체의 신문에서 제가 본 걸 제가 말씀드리다면 요번 일산에서 한 교육혁신박람회 그것이 소요예산이 1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전체 그런데 정부가 120억을 국가예산에서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북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한다면 전북 같은 데가 7억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7억이 지역교육청에서 7억을 중앙 교육부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람회를 해 갖고

서 거기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대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아주 불요불급한 교단선진화 부분이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깎아가면서 과연 거기다 120억까지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 혁신 박람회 그쪽에 교육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그쪽에다 지원한 액수가 얼마가 되며, 또 여기서 본다면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천여명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예산의 보조관계는 어떻게 됐으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서면으로 이따가 지금 바로 빼기는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 홍보비에 대해서 쓴 내역을 주시고, 전광판시설 같은 것이 얼마가 들었으며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든가 그 외 부대비용들이 얼마나 됐는지 이따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그 서류를 받아보고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까지 나와 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결산검사위원 9명의 서명날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의견서까지 만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시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출결산 중에 이월사업비가 475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걸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36건, 사고이월사업이 15건 됐습니다.

2003년도하고 대비표를 하나 조금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사고이월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가 하는 것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채권·채무 중에서 채무액의 차입금이 207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입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차입을 했고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대헌

관계관 설명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재정용자특별회계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으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재원으로 938억 310만원, 그 다음에 학교통폐합지원비 또 학교신설사업비

182억 해서 총 한 1,120억 정도를 차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한 913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2004년도 말 현재로 207억 정도가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금이라든가 이자상환 부분 국고에서 지금 지원해 줘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일 위원

요거는 전액 국고에서 앞으로도 충당이 되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윤배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냐고 우리가 책임을 물으면서도 내심 다음에 정책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쪽으로도 평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교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가 불용액이 3.1%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몇 %에 얼마였는가 하는 것도 다음 자료에 한번 내주시고, 가능하면 이 인건비

불용액 이게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상향해서 하는 책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이 남길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남겨 가지고 꼭 부득이 해서 써야할 때 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책정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전년도 7월 1일자 정원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이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어떤 결손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데 불용액이 남으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다마는 그걸 높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의 인건비 불용액은 저희들이 3.7%정도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2.8%로 불용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편은 수납액 내용 중에 예금이 자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47억 1,286만원 되어 있죠. 그래 지금 저금리 시대에 나머지 예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끝에 실음)

지, 사실 이자수입이 잘 관리하는 것 잘못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예금이자수입을 하고 계시는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로부터 어떤 자금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향후에 자금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환매채라든가 이율이 높은 환매채라든가 어떤 기업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해서 예금이자가 최대화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금고는 거의 농협에서 발생하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비표 같은 것이 좀 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다른 데 좋은 금융상품 저축할 때가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는 게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한번 봐 주시죠.

19쪽에 보면 이월내역에 청주운동중학교, 용성중학교, 송절중학교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 돈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운동중학교하고 송절중학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신설학교 연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성중학교는 LPG가스 충전소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그것도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 개교일자도 불투명하겠네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1년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대개 문화재청에서 감정결과가 얼마 정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도 걸려 나오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지표조사 하는데 6개월 걸리고 지표조사 결과 보존지역으로 되면 저희들이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절중학교는 보존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택지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대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표조사 하는데

● 이상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일신여중 운동부 휴게시설 신축도 추가 재원 확보 후 발주로 공기가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가 재원 발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신여중 운동부 휴게시설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억 5,000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소방법이 개정됨으로써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중등교육관리과 소관에 TV청소년 금연캠페인 2,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금연캠페인 계약기간 미도래 그랬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고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우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흡연교육사업 중 금연캠페인이 명사초청 TV를 통한 캠페인을 벌이도록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캠페인 만료기간이 금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만료기간 경과한 후에 계약에 대한 이행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됐으면

● 교육국장 노재전

작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가능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가능하죠?

● 교육국장 노재전

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616쪽에 한번 거기 교원명에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인원이

초등 15명, 중등 24명 그러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2억 4,646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명예퇴직신청자 중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교원이 있습니까? 616쪽에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당초 6,500만원 정도해서 5명을 계상해서 편성했고 그런데 2004년도에는 4명밖에 신청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보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는 명예퇴직이 잔여기간이 긴 걸로 생각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기간이 짧은 관계로 평균 단가가 6,500 잡았던 것이 4,000만원 정도 지급됨으로써 단가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한 1억 6,400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이상일 위원

거기 불용액이 2억 4,646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 교육국장 노재전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립학교 분이고 중등학교 퇴직도 그 퇴직인원의 변경에 따라 당초 예상인원보다 작고 1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공립에서 퇴직인원이 2월말에 10명, 8월말에 5

명 15명인데 그 계획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요런 거는 애초에 조사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40쪽에 보면 거기 교과서 무상지원이 나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26개교 그래서 예산액이 있고 여기도 불용액이 2억 2,997만 6,000원이 남아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 무상지원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무상지원 액수가 많이 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교과서 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률을 15%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인상률은 5%로 내렸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인상률을 높게 잡아놨는데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658쪽에 영동교육청 소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각종 대회 출전대비 훈련비 및 출전비 이게 1,817만 2,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교육청의 학교들이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 같이 작은 교육청에 그런 훈련비 및 출전비가 1,800만원씩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영동교육청의 체육활동 지원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육상선수 합동훈련비 초등학교인데 집행잔액으로 동계훈련 일부 선수가 도 훈련에 합숙 참가하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기왕 배정이 됐으면 다른 부라도 도와서 조금 여유있게 해주지, 사실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경비 한번 마련해 주느라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동교육청에서 지출할 돈이 도에서 지출하고 남았으면 부족한데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거 체육부 하나 키우고 하려면 아주 힘들고 안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도 체육 활동을 기피하고 부모가 안시키려고 하는데, 경비까지도 부족해 가지고 합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작은 액수지만 1,800만원씩 남으면 영동교육청의 다른 학교에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약간의 관항목을 바꿔서 유동할 수 있으면 그쪽 교육청에 배정된 돈은 지역교육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쓴 돈이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하는 거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내년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평소에 제가 잘 모르고 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타당

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2005년도 결산에는 이런 게 이렇게 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잘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장시간 됐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이어서 또 다시 2004년도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들은 검사된 내용들의 항목들만 주요항목들만을 이 결산서를 받아들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검사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결국 커다란 항목들만을 가지고 정리된 것을 다시 심의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교육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행청 관계자에게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교육위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리국장님께서서는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이 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한번 또 그런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어떻게 하는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집행청 입장에서.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강력하게 도의회에다가 어필을 의사포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일 전 의장이나 지금 현재 고규강 현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내시고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매우 진부한 형태의 정리를 첨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 권한행사 부분에서 도의회가 결국 교육위원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파트너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결산검사를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 부분에 대한 과다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차기 년도의 예산에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

고 또 50%에서 100% 불용률 비율이 있는 71건에 17억 정도 예산과 그리고 100% 불용률의 26건 1억 4,000에 관련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왜 첨부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산심의를 늘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항목에 집중해서 관련한 자료들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일선 학교에서 그것들에 어떤 사용결산 내역들과 대조해 보고 요런 과정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고 명칭 되어 있는 교육감 재량비라고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용내역서를 2004년도 내역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항목과 그리고 항목들을 꼭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학교를 각 지역교육청 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의로 표집을 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가 어떻게 일선 학교회계에 편입되고 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적정하게 표시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

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예산서를 제가 받아보고 정리를 하기는 나름대로 급하게 했지만 학교 예·결산서를 엿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이것을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구나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제가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2억여원이 지금 책정이 되고 이것을 감액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학교의 어떤 항목들을 쭉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는 잘 아시는 대로 '93년도부터 이 제도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긴급한 재해 복구를 요한다든가 또는 어떤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더 수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

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현재 전체 총 예산에 0.3%정도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0.3%중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한 80%정도 그 다음에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는 한 20%정도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그걸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 또 어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교육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타 시·도는 어떤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타 시·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 0.3%라는 게 우리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국 시·도 공통사항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도 그 비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은 무슨 도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지붕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역교육에서 관내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수렴을 하시고, 어떤 학교에 물론 한정도 없겠지만 마는 올해에 어떠 어떠한 것들을 꼭 줬으면 좋겠다는 우선 순위를 학교마다 있는 것을 수집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게 무슨 선물도 아니고 또 그것의 성격이 일정하지도 않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예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무마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이것이 그때그때 긴급하게 갑자기 작년까지는 새지 않던 지붕이 올해 갑자기 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긴급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도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가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구태여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지금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교육감님이 되시든지 간에 어떤 어떤 생색내기 혹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마음을 사두자 선거인단이나 아니면 일선 학교의 관계자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사두고 다시 차기나 이런 것들을 기약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라는 것은 매우 불건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학교마다의 어떤 제가 표집으로 해서 예·결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서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고 또 결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할지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입예산에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는 많지 않고 그냥 일반 목적사업비의 하나로써 그냥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또 조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포함시켜서 목적사업비의 일환으로 그냥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기간동안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가 책정이 된다면 예·결산서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표기를 하고, 또 그것이 결산부분에서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역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들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편은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EIS상으로 예산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예산서에 추경예산을 저한테 제출한 학교는 한 두 개의 학교에 불과하고 거의 다 지금 그것이 그냥 추경을 반영한 예산서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산·결산 심의를 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 개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를 주고 그 안에 11월이나 12월에 책정된 특별지원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추경예산서는 그러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하는 용도가 지금 이것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준

예산서를 저한테 제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그 자료에 전부 합산해서 추경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서가 있기는 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학교마다 있고 저한테 제출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요구하시면 가능합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잘한 학교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결산 이런 것이 아주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항목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특정항목을 제가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학교운영위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보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겠구나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부분에서 제가 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되겠죠. 전출금이 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전입금을 제가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학교운영지원과 단위에서의 어떤 수시적인 점검과 독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요것들을 정리를 소략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 급하게 하루만에 하는 바람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표가 되면은 한번 제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서부터 37쪽까지 그 내용 중에서 18번에 청주교육청, 26번 충주교육청 우선 세부적으로 얘기드리다면 청주교육청 소관 교단선진화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고 충주교육청은 6,650만원, 제

천교육청이 2,840만원, 진천교육청이 350만원 전부해서 거의 50%이상이 불용률이 되는데, 100% 불용률인 12번의 제천교육청 교단선진화 350만원과 15번 난에 있는 청원교육청 350만원, 17번에 청원교육청 350만원 등은 직접교육비로써 이게 조기에 투자되어야할 텐데 조기에 투자가 안되고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뭔지도 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기에 투자되어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되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조기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적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라든가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걸 잘 정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늦게 교부된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집어넣고 못쓰는 이유가 뭐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자금들이 적정기간 내에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바뀐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될 금액을 전액 내지 거의 50%이상 불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또 자금활용에 관한 운영의 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폐교재산 대부분이 미수납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징수가 됐나요? 제천교육청 및 단양교육청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가지

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 **성영용 위원**

그러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17쪽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주일신여중 운동부 휴게시설 신축공사 사고이월이 1억 4,83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법 개정에 따른 문제라고 했는데 이 소방법 개정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았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소방법이 몇 개 개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소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우리 1회 추경이 2004년 5월 28일 확정되고 2004년 5월 29일 소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 차이인데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종이 한 장 넣었다 빼는 정도의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시키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이 5월 28일 확정이 됐지만 1회 추경 예산편성 작업은 한 2개월 이상 전서부터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7쪽에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1억 1,174만원 중에 6,262만 6,000원만 사용하고 43.95%가 되네요, 4,91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은 몇 %나 되는 거죠?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연 비율 6.5%입니다.

● **성영용 위원**

연 비율 6.5%면 은행이율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 **교육국장 노재전**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부담은 6.5%중에 3.25%입니다. 보존해 주는 비율입니다.

● **성영용 위원**

보전 비율이 6.5%이고 본인 비율은 3.25%요, 그러면 관련 교원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무주택 교원의 전세자금이든지 자녀 결혼 때 결혼자금 같은

것을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복지차원인데 제가 판단하건데 아주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충청도만 전부 집이 다 많고 결혼하는데도 물론 본인 결혼이나 자녀 결혼 때는 그만큼 재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본인 결혼 내지는 초임교원들이 방을 얻는다든가 이런데 전혀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 **교육국장 노재전**

글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래서 홍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고맙습니다.

3%라고 그러면 상당히 교원들이 대부분 내도 그 이상의 저금리로 대출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충분히 복지사업의 성격인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에 2004년도 6대 특색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5차원 영

재교육 두뇌충복21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영재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3,781만원 중 1,830만 5,000원만 사용하고 51.58%인 1,95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5,721만원 중 3,962만 7,000만 사용하고 30.73%인 1,75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단위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그 내역과 실제 세부 실천 내역을 예산 사용내역과 같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집행한 사실로 컴퓨터 영재교실 운영에 있어서 미집행된 것이 운영강사가 교재 만들 때 외부교재를 만드는 것보다 자체 교재를 복사 활용했습니다. 그래 갖고 원고료, 인쇄비 그게 미집행이 됐었고, 또 자료구입에 있어서 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도 충북에듀넷에 탑재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그 경비의 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이 1,758만 4,000원으로써 30.7%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 **성영용 위원**

세부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성영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저
도 마칠까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쪽에 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걸 아마 질문 안한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금고의 결산부분이 있
어요. 21쪽에 '2004회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 검사결과는 다
음과 같으며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해 가지고 총수입,
총지출, 차인잔액, 비고가 나와 있는데,
차인잔액 중에서 비고난에 보면 결산전
다음연도 세입이입액 500억, 금고예치금
액이 148억 3,551만 2,830원 해서 2005년
3월 11일 다음연도 이입 이렇게 했는데,
뭐 예산이 국고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부
족하기도 하고 사업에 차질도 오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아까 동료위원들 가운
데 예금이자 고수익성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시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이 148억이라고 하는 걸 금고에 예
치해서 2005년도 3월 11일 다음연도에 이
입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 차인잔액
을 전액 결산전 다음연도에 세입이입액으
로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많
은 돈을 은행에다가 이자예치를 해 놨다
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
입니다마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
우리가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예산편
성하고 돈을 금고에서 얼마를 남기고 얼
마를 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
그마한 적정 금액은 두고서 전액 다 우리
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했
으면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이점에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2004년도에 잔액이 648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예산상의 금
액이고요, 실제 500억은 자금을 갖다가
다음연도에 세입조치로 세입금액으로 잡
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초부터 전액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
게 이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국장님, 제 핵심요지는 500억이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148억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 148억이라고 하는 것을 세입 이입금으로 조금 더 집어넣으면 우리 교육 예산이 더 융통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왜 뚫니까 하는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 핵심은 또 언뜻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2003회계년도 보니까 그때는 9,600만원만 이렇게 했어요. 9,600만원만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148억하고 비교도 안 되고 조금 요건 내가 자료도 조사했어요. 또 하나 미안한 얘기지만 2000회계년도 자료를 딱 보면은 제로 영으로 해놓고 다 전액 잔액을 예산 이입을 했습니다.

이런 2000년도 사례도 있고 '93회계년도는 9,600만원 썼고 그런데 2004년도 회계 금고의 결산에서는 148억을 국고도 예산 없다는데 거기다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먹겠다, 이자도 씹니다. 148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느냐를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율은 얼마고 얼마나 나왔는가 우리 지금 예산 부족하다 아까 많이 질문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이게 좀더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바람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제가 500이 어떻다든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온 수치는 현금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운영 관계인데 예산의 금년도 결손이 365억이 됐다고 그래서 이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다시 한번 여쭙보겠는데 148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걸로 봐서는 그 차인잔액 중에서 그 돈이 2005년 3월 11일 다음연도 이입이 됐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148억 어떤 쪽 결산서를 한 몇 년도를 검토해보니까 어느 해는 아주 액수가 적게 이입이 되었고, 148억이 2004년도 내에 쓰지 못하고 그냥 금고에 넣어서 이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활용된 부분인지 이게 위원으로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결산서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무슨 핵심얘기는 방향이 자꾸 틀리네요. 질문하고 답변의 방향이 지금 핀트가 안맞아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48억 그 잔액은 항상 이율이

높은 걸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 회계에서 쓸 자금이 없어 갖고서 현금을 거기서 빼서 2005년도로 이입을 시킨 겁니다.

이를 테면 중앙에서 자금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현금을 이용한 겁니다.

● 위원장 송대헌

언제든지 우리가 한 500억 정도는 예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 결산이니까 2003년도에 이렇게 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지금 2004년도에 세입 이입액이 500억 정도는 언제든지 두고 있는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2004년도 잔액이 648억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 648억 이렇게 있는데 그걸 예치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에 148억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아니 648억을 자금운명을 하는 중에서 500억을 2005년도에 현금이 필요해서.....

● 위원장 송대헌

이입을 했고, 이해가 가요.

그리고 148억을 남겼잖아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148억은 항상 정기 아까 말씀드린 환매채든지.....

● 위원장 송대헌

환매채니 이런 거 등등 그 액수를 꼭 그렇게 많이 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조금이라도 더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만 옮겨오고 나머지 돈은 조금이라도 더 관리하기 위해서

● 위원장 송대헌

근데 이게 해마다 결산을 보니까 어떤 때는 9,000만원 어떤 때는 불과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원칙도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준 왜 그렇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이게 자금운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놓으려고 한 겁니다. 만일 남겨놓지 않으면.....

● 위원장 송대헌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남겨놓는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산 부족이 아니라 현금 부족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현금 부족이라 예산하고 현금하고 다르

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중앙에서 자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늦게 도착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 위원장 송대헌

자, 그럼 간단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4회계년도 결산서에 결산 이입액하고 예치금에 대한 항목을 표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된 사유를 설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으로써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표로 작성해서서 왜 이렇게 해마다 다르고 어떤 때는 148억, 어떤 때는 불과 몇 천 만원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설명은 보다 좀더 남겨 가지고 효율성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남겼다는데 그것이 공감의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긴 시간 아주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하나

내용을 같이 들으셨지만은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될 이미 2004년도 지나간 결산의 얘기입니다만 정책에 담아줄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질의 가운데도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집행청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이 한 부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상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오고 갔던 이야기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하니까 좀 우리 집행청에서 반영할 것은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 간사 이기수

아까 자료 요구해 갖고서 그 다음에 질의해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그런 시간을 주실 겁니까?

● 위원장 송대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도 자료가 있었고, 성영용 위원님도 있었고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다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내서 급히 되어야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부득이 해서 이 자료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를 점심식사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더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옥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인데 무슨 긴급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재 같은 경우 어떤 보험성의 그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예비비를 또 지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화재가 날 적마다 예비비를 지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재해복구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이 미처 못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보상금은 바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증명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입조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한 것들은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만 그냥 책정하신 것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그러십시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좀 정회시간에 준비했다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의 성금접수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에 월드비전에서 3,443만 9,000원을 월드비전에서 받았고 이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됐고, 선프라자에서 3,150만원은 이게 아마 티켓으로 받아 갖고서 보태서 줬다고 했는데, 이게 티켓이 5만원 자리이면 5만원 자리에서 얼마를 들어왔으면 거기다 얼마를 더 보태서 이렇게 줬다면 보태준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이게 예산 총계원칙에 의한다면 그것이 표시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식비 3,860명에 대해서 1억 3,727만 2,000원을 2003년도에도 그걸 안넣고 그냥 배분하고서, 수입도 안잡고 그 다음 지출도 안잡고 지역교육청에다 나누어 줘 갖고 그걸 결산심의 할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직접 전달했고, 공동모금회에서 그리고 또 난치병 어린이에 대해서 1,000만원씩 보조하는 거라든지 이걸 직접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안하고 맞바로 본인들한테 지원했기 때문에 안잡힌 모양인데, 이것도 대부분 누락

이 안됐는데 선프라자에서 3,150만원도 티켓으로 받았으면 그걸 받고 수입으로 잡고 거기다가 지출은 더 보태서 줬다는 우리 지출이 그만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더 보탤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계산한다면 알지만 학생들 전체한테 준 금액을 환산해서 3,150만원을 빼야지 거기서 얼마 더 지원한 것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근데 이게 아는 지금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오는 액수는 계산이 되는 얘기예요. 전체 학생한테 지원한 액수가 5,000만원이라면 3,150만원을 감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금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태 갖고 지출한 얘기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될게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예산에 밑에 월드비전에서 준 건 비슷한 금액이 3,443만 9,000원하고 3,150만원이라는 얘기는 1,2백 만원 차이가 있지 그게 가액은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밑에 것은 돈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세입잡고 세출잡은 얘기인 모양인데 이것은 티켓으로 줬다고 해도 이게 5만원 자리

티켓이든지 6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이게 3,150만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든지 하면 그만한 수입을 잡고서 결산에 세출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프라자가 개관을 하면서 쌀로 받았습시다. 선프라자 개관 기념으로 5만원씩 해 가지고 쌀로 받았는데 교육감님에게 쌀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면 전달할 길이 없으니 농수산 농협의 농협티켓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3,150만원을 어치를 직접 종이로 가져 왔어요. 그래 교육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티켓을 우리가 현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종이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나눠줬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상품권이면 농협 상품권이면 액수가 다 나와 있지 그 액수 나와 있으면 3,150만원을 어떻게 해서 뺐 거예요. 벌써 액수가 있는 얘기니까 그거 쓴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3,150원을 세입에 잡고서 세출에서는 5,0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0만원으로 해 갖고서 우리 교육예산을 2,000만원 이상 보탠 것으로 이게 분명히 나와있어야지, 예산총계원칙에 의해 갖고서 들

어가고 나온 것이 분명해야만 되는 얘기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세입도 안잡은 얘기가 되고 세출도 보태서 줬다는 게 어디 예산상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저 그것만 드렸는데 제가 아직 회계법을 잘 몰라 가지고.....

●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안하나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예산에 편입될 수 있는 건 현금만 할 수 있습니다. 현물은 안됩니다. 현물은 안 되고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현금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어떻게 현금만 편성합니까? 대신 현금이나 똑같은 유가증권인 얘기인데 그게 아니면.....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상품권을 주는 거는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표시가 되

어야지 되지 그럼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건 넣어야 되지 말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현물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 간사 이기수

아니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든지 하면 그 다음에 1회든지 몇 회든지 그게 들어왔을 때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도 그럼 엄밀히 얘기한다면 수표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수표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돈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상품권하고 수표하고 틀리고

● 간사 이기수

아니 그게 몇 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간사 이기수

상품권 같은 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후원금이

라든지 어떤 것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처리해 버리고 만다든지 하면 전체 예산 속에서 그것은 그냥 표시없이 왔다갔다하는 돈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규정에 예산편성 원칙에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현재 예산제도는 현금주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일종의 유가증권일 텐데 5만원 짜리는 5만원의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증서인데 현금이나 똑같이 통용되고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라고 하던지 하면 수표도 안 되는 얘기에요, 수표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예산편성 안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 논리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세입·세출 현금에는 들어가지 않고 채권이나 채무 여기에는 들어갈 테죠, 상품권 같은 현물 같은 경우

● 간사 이기수

거기서 쌀을 가마니로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겠고 말입니다. 농협상품권이라는 얘기는 돈과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걸로써 전부 나눠주는 얘기가 되는데 좀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질의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교육은 어디까지나 조용하면서 내실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경우에 너무 지나칠 정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어느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판촉전이나 비슷한 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 본다면 지금 다목적멀티비전의 전광판이 이게 전기료가 140만원에서 12개월 하면 거의 천 6,7백 만원 소요되는 것 같고, 빌보드 홍보판이 14개에 20만원씩 하면 1년에 한 달에 280만원이면 연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전기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목적멀티비전 전광판이 3억 5,000만원에 1대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 빌보드 홍보판도 그것이 14개든지 하면 2,500만원씩 해 갖고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한 7억 정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매년 5,000만원 이상씩의 교육예산을 그쪽으로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라는 얘기는 내실있고 학생들을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서교육이나 덕성교육에 목적을 두어 갖고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걸 홍보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측면에서 학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걸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내 주관에 의한 얘기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참고하셔 갖고서 앞으로 그런 부분 쪽에 좀더 내실있고 조용한 가운데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설학교의 아파트 신축 지역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입주자들도 헌법소원을 해 갖고 위헌소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용지를 사실 입주자가 부담했는데 입주자가 부담을 안할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교육예산으로 땅까지 사야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교육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위헌소지 해 갖고서 그걸 청구하는 기관도 두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쪽에다가 우리가 다시 반환하는 우리 교육예산이 얼마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2003년도에 31억을 받았습니다. 학교부지 매입경비로 도청에서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에 60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한테 전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31억은 입주자들이 반환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간사 이기수

반환해야 되죠. 그건 그러면 앞으로 학교 지을 때는 아파트 지역에는 천 세대인가 얼마 이상은 학교용지를 우리가 거저 받아 갖고서 학교를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일이 그 땅까지도 우리가 사야지 되는 얘기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앞으로는 부지매입비를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신설교는 9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10%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또 하나 뭘니까, 요즘에 토지를 등기 안해 갖고서 된 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재산이 등기를 안함으로써 문제가 되어서.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현재 파악된 걸로 영동에 용문중학교가 소송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보면 대개 그때 이걸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는데 그거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가 군 소유로 되어 있어 갖고서 교육청과 군과의 서로 협의를 해 갖고서 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100건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행자부 쪽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군 소유라고 하든지 하면 그냥 넘겨준다든지 하면 해당 공무원이 문책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갖고서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거 파악해 갖고서 등기 안 된 땅들은 말입니다. 바로 등기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야될 겁니다.

이게 만약 개인한테 넘어간다는지 해 갖고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는 감정 가

격으로 밖에 살수 없고 그쪽에서는 그걸 못판다 감정가격으로는 못판다 이렇게 됐을 경우 땅을 살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모교 초등학교가 그런 일이 있어 갖고서 안돼 갖고서 나중에 동창회로 돈 거둬 갖고 거기다가 감정가격 이상된 돈을 거기다가 주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갖고서 어려운 지경이 되는 얘기인데, 그거 아주 전산관리 해 갖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등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야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조사해서 과장님을 저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투자관계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학교를 개축한다든지 또는 모든 걸 할 때, 물론 해당 교장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 갖고서 시설과에 올려 갖고서 거기 있는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투자 적격성에 대한 걸 판단해서 서열을 매겨서 결재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표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학생이 60명인 학교는 비슷한 여

건을 개선해 줄 수 있게끔 똑같이 해 주고, 300명이면 300명인 학교는 그 급에 맞게끔 해줘야지, 이게 교장선생님의 열의와 또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든지 이래 갖고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떡 장사 떡 떼어 주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예요.

뭔가 표준규격을 해 갖고서 거기에 맞게끔 그 학교는 얼마큼 예산을 해 갖고 딱딱 이렇게 배정을 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한 두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의 커뮤니티 같은 걸 결성해서 거기서 잘 판단해 갖고 이걸 줘야지, 이거 누가 해줬다 누가 해줬다 우는 애 떡 떼어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예산 자체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사이즈나 학생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 갖고서 적정선을 정해 갖고 거기 수준까지는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끔 투자되어야 되고, 거기 또 어디 학교에 시설을 얼마를 금년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전체를 조사해 갖고서 커뮤니티에서 고루 평가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다면 노후 관계라 해 갖고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갖고서 거기서 순서에 따라 갖고서 이게 먼저 선후가 바뀐다든지 또는 이게 불공

평하게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쪽에 제도화시켜 갖고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배분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품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 놓고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걸 좀 해 주시고, 과거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부나 이런데 쪽에서 정치인들이 따다 쥐 갖고서 올려져서 먹기로 불공평하더라도 꼭 배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 누가 해서 해줬다든지 국가예산인데 누가 해준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세금에 의해서 갖고서 고루 배분해 갖고 공정성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

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 55분)

● 위원장 송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금으로 있는 금융자금 및 저수익 연기금에 대한 투자처 제공으로 경제의 확대 재산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학교신설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사업위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금년 1월 27자로 개정하여, 민간인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새로운 개념 민간자본 유치 제도인 BTL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참 조 :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기획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BTL사업 좀 생소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제안설명도 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에 대해서 많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좌석 순에 따라서 김남훈 위원님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일명 BTL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그 간에 몇 번에 걸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그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추진 계획 총괄표 그걸 보면 학교신설이 2005년도에 6개교, 12개교, 7개교 이렇게 2007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사개축도 다목적실이 증축이 아울러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학생 수가 계속 이렇게 해서 내년에 12학교를 다시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발생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 어떤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금년에 6개 학교를 신축하고 내년도에 12학교를 또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전체 학생 수로 보면 증가가 추

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12학교나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학생수용이 초등학교는 2006년도에는 약 132명이 줄고 2007년도는 한 3,694명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또 중학교는 일률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도 내년도에 340명, 2007년도에 1,700명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신설요인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학급당 지표를 금년도에 3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명씩 줄이면 학급당 인원 지표를 줄이기 때문에 신설 요인이 그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신설 학교가 필요합니다.

● 김남훈 위원

학생 수가 아파트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학교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급당 학생 수를 갖다가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신축보다는 증축이 더 저기인데 이 증축개념도 신축으로 포함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 학교는 대개 36학급, 30학급 규모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면 시설을 하려면 운동장을 체육장을 파고들거나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학급 증설은 어렵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어차피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지금 현재 기존 학교에 학생 수를 줄일 경우에는 지금 증축할 대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신축 학교로다가 보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신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지금 현재 우리 신설학교 계획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신설학교 계획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그 12학교를 어디어디를 내년에는 예측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내년에는 산남 3지구, 성화지구, 강서지구 이렇게 장전지구, 성화지구가 저기입니다. KBS방송국 있는 쪽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증·개축이 있어서 이

것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8개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개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8개교를 이렇게 증·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총 금년도 사업시설비 733억 3,100만원인가요,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 학교신설은 설명말씀 듣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 다목적실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계획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맞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다목적실을 몇 개 학교나 했는지 2003년도, 2004년도.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개 실이 반영됐고 2004년도에는 8개 실이 반영됐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금년에 8개교, 내년에 10개교 다음에 2007년에 8개교로 되는데 이 다목적교실 증축도 보면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을 빚을 얻어서 당겨서 쓰는 거나 마

찬가지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신설이나 학교 증·개축 같다면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고가의 이율을 붙여서 상환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목적교실 같은 걸 갖다가 숫자를 줄이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은 교육활동의 권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2007년까지는 전체 학교 수의 40%를 확보토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4년 말까지 한 33%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7%정도 약 한 29개 동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일부하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목적교실이 현재는 물론 교육활동으로 직접 활용도 잘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활용도

가 넓혀져서 확대되어서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는 사실 무리가 많이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 압박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초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시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다목적실교실 증축 대상교 선발을 금년에 어떻게 했나요, 선발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지금 다목적교실 지원 대상교는 저희들이 일단 기준으로 선정하기는 1면1교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학생수가 이렇게 증가 전망이 있는 학군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공단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그런 전망있는 학교, 또 각종 체육활동이 많이 되어 있는 또 지정종목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문하시죠.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BTL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재원으로써 노후시설 개축 및 체육관 증축은 총액 교부금 및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체 재원이 우리 있습니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앞으로 당해 연도에 이렇게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20년정도 약 20년에 걸쳐서 상환하기 때문에 균등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물론 교부금이나 이쪽에서 오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도 상환한다고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우리 재원이 있느냐 이걸 물어 본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거쳐 가지고 상환하는 거니까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성영웅 위원

그리고 3쪽에 현재까지 주요 추진현황에서 민간투자 사업추진 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구성 민간투자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어떻게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거기 200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주로 BTL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BTL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향후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가 요런 내용들을 주로.....

● 성영웅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어떤 여기에 참여라든가 전혀 없었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성영웅 위원

그리고 4쪽에 사업자 참여가 있는데 민

간사업자로서 사업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격요건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형태는 어떤 회사 법인으로써 어떤 컨소시엄도 구성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이 자격요건 같은 것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는 설계자, 시공자 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중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전체 그 업체를 포함을 해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이 응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도 다수 쥘어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새로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응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성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BTL대상사업 선정기준 2쪽에 조금 대상사업지정 안에서 2쪽에 수익이 예상되며 했는데 수익이 예상될 수 있나요 우리 BTL사업으로 하면서, 수익이 예상되며 인근 학교의 과적·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그 뒷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BTL 사업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수익이 예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학교 교실도 있고 다목적교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학교가 개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일부분 임대한다든가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충북도 교육청은 해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가 혹시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써 거기 학교신축과 다목적실 신축·개축 이런 예산으로 추정

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청에서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걸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갖고서 이자까지 들어가면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자분 20년 상환해서 거의 이자하고 모든 걸 합치든지 하면 배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요구했던 BTL사업으로써 물론 학교신축이나 이것은 학교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신축해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만, 다목적실 신축만은 과연 BTL프로젝트 안에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위원들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다목적실을 BTL사업 속에 넣은 현황을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걸 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저기 계획은 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료는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40%정도를 이미 확보한 일부 시·도는 포함이 안 된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상당양을 체육관도 BTL사업을 포

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신축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나중에 그리고 다목적실은 교육청에서 이자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맞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학교신축 문제는 교실이 부족하니까 이걸 당장 안할 수 없죠. 이자를 물면서라도 우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 가지 그거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까지 하고 흔쾌히 우리가 이걸 결정해서 하겠지만, 다목적실만은 아무렇게도 교실보다는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많은 예산을 또 그것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육청 예산으로써 이자를 물어가면서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 교육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

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교실만 있으면 학생이 교육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사회하고의 연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소 40%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재정압박이 크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 금번에는 최소화시켜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뒤따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잘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재정이라든가 어떤 재정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가지고 재정압박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아까 성영용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업체입니까, 다시 만들어 갖고

서 거기서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대부분 기존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컨소시엄이라든가 이걸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회사가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근데 이게 그런 추측은 안합니까?

상당한 이자를 20년간 받겠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별 매력 없이 갖고서 참여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예상은 안해보셨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좀 고려된 것 같아요. 어떤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재원도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상당수 지원할 것으로 응찰에 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BTL사업이라는 게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소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이용해서 학교를 세우는 제도인데, 여기 민간사업자 사업 참여 범위 또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자금조달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우리 교육시설이니 만큼 우리 전문가들이 설계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무슨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 뭐가 만나왔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울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범위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그 다음에 건설, 운영하는 업체에 일괄해서 포함해서 민간사업자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설계할 때 설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교실조도는 300룩스다 3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실당 전원이 몇 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그거에 합당한 설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심사해서 합당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탄 건 몰라도 이 설계부분에는 우리가 깊이 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땅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죠. 그런데 과거처럼 교지가 8,000평, 만평 같이 크게 제공되는 데라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지금 한 3,000평이나 3,500평되는 학교부지에다가 설계를 이상하게 해 나가지고 운동장을 반정도 차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설계를 받은 설계도 10년쯤 세월이 흐르니까 아 이걸 잘못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 먹는 장사 기업하는 사람이 이익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좀 쉽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목적에 좀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어쨌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신설이야 어차피 학생이 늘어나는 곳에 신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노후학교 개축은 이것도 BTL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노후시설 개축도 가능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노후도가 벽돌은 25년, 콘크리트 슬레이트는 45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한 10개 교실을 지어놓고, 또 몇 년 후에 붙여서 지어놓고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 서로 틀려 가지고 전체를 뜯어낼 수 없는 형편이 생겼을 때 이런 노후교실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한다는 어떤 뭐 설명이 있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건축한 경우에 보편은 개축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먼저 건축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상황에 따라서 왜냐 하면 상부에 증축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기준은 어렵고 상황을 봐서, 개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거쳐서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개축해야 되겠다 이러면 개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언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관리를 학교를 전면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해도 좋은데, 가령 부분적으로 개축했다 또 학교 강당을 하나 신축해서 들어왔다 이랬을 때 학교장이 일부는 관리하고 일부는 BTL 회사에서 관리하고 이러면 관리의 이원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업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이원화될 경우가 생길 경

우에는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증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학교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교육시설 교실이 모자르니까 체육관은 가능하면 억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로 해 가지고 학교마다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BTL사업 속에 넣은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나 모두가 하는 얘기가 기왕 짓는 것 크게 짓자 물론 크게 지으면 좋죠, 거기서 농구·배구 다 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물론 도시의 학교는 커도 좋겠지만 소규모 학교에 다목적실을 짓는데 지나치게 크게 결국은 이게 빚으로다가 하는 건데 학생 수와 규모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죠, 학생 수 몇 명에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잘 지켜집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규모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초·중등 학교 급별이라든가 학생 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

량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게 한 두건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 규정도 잘 지켜서 불필요한 시설이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가봐도 그렇게 그 안에서 농구 다하고 다하는 체육관 가진 학교 별로 없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공공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학습에 일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다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강당 지으면서 소방시설을 하는데 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 어떤 분이 답변할 때 그거 다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화된 기준이 현재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학교시설에 관해서 학교 구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소방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어서 그 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현행법으로는 소방시설 해야 되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 강당은 안해도 되는 걸로.

●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좀 참았다가 1억 이상 들어가는 돈 덜 들게 속도를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 시설과장 안세열

글쎄 그런 세세하게 집행해야 할 단계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시설을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기왕 이렇게,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BTL사업을 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할 학교, 증·개축 뭐 이런 걸

물량을 뽑아 가지고 교육부에 일단 올립니까?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절차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 협의회를 1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1월 19일날 실시해서 사업설명과 추진계획을 협의를 했고, 그 다음 대상학교 조사를 해서 2월 1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5월 18일입니다.

● 이상일 위원

아니 통보 올 때 우리가 물량을 가량 1,000억 하겠다 하면 거의 다 승인을 해 주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거의가 아니라 시·도별로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조정을 했고, 단가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규모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확정되면 업자선정 절차를 밟는 거죠.

● 시설과장 안세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통과되고 도의회의 의결이 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및 성과요구 수준서를 작성을 7,8월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시설사업 시행계획고시를 그거 끝남과 동시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입찰공고 하는 방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응모를 받아서 사업계획 검토와 평가를 9,10월중에 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적정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 및 시공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줄 때까지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사항을 상세히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승인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 이상일 위원

모처럼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위원회 승인이란 것은 요식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BTL사업에 관련해서 지역 모든 언론에서 기정 사실화 하면서 이미 며칠 전에 다 보도가 나간 것은 교육청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기정 사실화 한 것은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불쾌하고 교육위원회 승인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무조건 올해 그것을 몇 학교까지 전부 해 가지고 학교신설과 그리고 다목적교실 모두 포함해 가지고 이미 다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 적은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 교육위원회에 안건으

로 제출을 했습니다.

안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언론 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는 것 같아요.

● 진옥경 위원

그 안건 제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안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깎을 건 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모든 도민이 다 보는 언론에 그대로 그냥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안건만 올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소상하게 보도 나가지는 않죠. 자세한 내용들을 어디엔가 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도가 나갔을 텐데, 굉장히 교육위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지금 저희들이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다가 자료를 준다는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 하면 그분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취재에 나오면 이제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물을 것 아닙니까?

이.....

그러면 언제나 교육위원회에 어떤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유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 진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예민한 사항들 같은 경우 미리 다 보도가 되는 것들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산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허수아비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충분히 하죠.

● 진옥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소박한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왔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에까지 거친다는 사항은 기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데 내내 요식 행위 그냥 앉아 가지고 위원들은 그저 방망이나 두들겨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외부에 홍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지를 시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를 삭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고요, 언론에도 그런 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실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맨날 홍보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많은 예산도 책정하시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십니까?

● 진옥경 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지 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업자들 BTL을 신청하는 업자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는 공공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리가 최종 어떤 승인이 난다든가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민자이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것을 염두 해두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BT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제가 당부도 드렸지만 부패입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주요 경쟁이 심해진다는지 이럴 경우에 교육공무원들과 업자들간의 어떤 결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사소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들이 20명 가까이 한 번에 그냥 다 징계를 받은 그런 사안들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서게 되면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아니고 기존의 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개로 하고 사업

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업자 선정에 대한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업자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물량을 조정한다든가 또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한번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당초에 승인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척되는지 그 내용만 파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선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위에서든지 뭐랄까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위원회의 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다 그것들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상관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지금 이런 방안들이 같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학교가 시급하고 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으신가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나 아니면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규정짓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일단 심의위원 구성은 우선 내부 공무원도 일부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일부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외부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그 뭐랄까 명예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겨난 단체들은 또 믿을 수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의 구성비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 혹은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5 대 5 이상의 숫자를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비리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명예를 걸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건물은 내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또 어느 쪽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분쟁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바로 이전이 되고 다만 관리권만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그런 분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혹은 안전부분들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학교 운동장 지하 같은데 많이 이용해 가지고 짓는다 면적이 좁은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괜찮지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걱정이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자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그거는 임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업자가 자기수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어떤 시설을 임대해 준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학교 운동장 지하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어떤 안전관리라든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 한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액수가 있는데 BTL사업 추진현황에도 있지만 지침인가요 지침에 보면 단위시설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 및 단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신설학교의 면적당 m²당 단가

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단가가 101만 5,000원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BTL사업일 경우구요, 현재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학교의 단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한 80%정도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요, 그리고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체육관은 종전에는 한 90만원 정도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140만원 정도

● 진옥경 위원

132만 7,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또 급식소도 예정하고 있는데 급식소는 얼마씩 들었습니까, 평방 미터당 어떻게 합니까?

신설학교 말고 개축하는 청주여상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2005년에서 2007년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 예산을 올리시긴 한 거지만은, 물론 우리가 어떤 공사기간을 잡으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1.5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배 정도는 아니지만 150% 정도 되는데 이런 액수를 단가의 액수로 책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단가는 교육청에서 따로 정한 단가가 아니구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다 같이 통용되는 기준단가입니다.

실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조정됩니다. 실질 계약하는 것하고 여기서 예산 편성할 때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는 것하고 요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 89만 1,000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전국 단위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집행 시에는 교육청 예상단가 또는 실적단가가 적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아니라 완전히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가 그대로 근거하셔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산은 현재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실제 공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할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집행 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말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그 업자가 설계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규모라든가 물량에 맞는 단가가 그때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증감은 계약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예산액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할 때는 조정이 많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올라온 대로 통과만 시키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가장 적절한 규모의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몇 가지 당부드린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신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민간투자 사

업이 총 소요액 2,370억 20년 상환이더군요, 20년 상환에 지금 단가로 계산한 부분이 2,370억, 1,033억 2,400만원을 빌려 쓰고 매년 갚아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20년 후에 상환하는 액이 2,370억이니까 미리 갚는 부분을 복리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들어간 액수를 20년을 총 합치면 2,370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계산한 우리 충북의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돈을 빌려쓰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이걸 심사 이렇게 다루고 이걸 다루라고 우리를 뽑아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다루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간단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결국 충청북도에 오는 우리 국가부담 수입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써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 이상 빌려 쓴 돈의 배 이상을 이자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 거두절미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설교는 이자부담을 국가가 다 한단니까 아까 관리과장님 우리 수요공급 다 조사해 가지고 신설교 수급계획해서 내놓은 것 이거 뭐 국가가 이

자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논의할 위원님들이 소합병적으로 우리 도만 생각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좌우지간 우리 도로써는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 이럴 때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해서도 빨리 신설교 학교 짓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교실 아까 동료 교육위원도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노후교실의 중·개축 문제를 이게 사실은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BTL사업을 주신 책자 설명을 쭉 한번 읽어 봤어요. 쭉 한번 읽어 봤더니 목적이 나라의 민간자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급한 시설을 타당도 조사해서 책정해 빌려쓰라는 취지더라구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을 타당도를 조사해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못 주니 교육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빌려서 집을 쓰고 이자 갚아라 이게 기본 취지더라구요, 여러 가지 절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급한 것이 노후교실에 대한 우리 신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노후교실 개축인데 과장님을 내가 담당 과장님 여쭙봤어요. 왜 이 노후교의 개축문제 이런 부분을 시급하고 한데도 여기에 반영이 안됐느냐 이렇게 했더니 담당 과장님 말씀은 반론이 있다면 과장님 있다 반론하세요. 이게 요번 계획서에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침에 금년도 11월까지 어떻게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니까 개축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 신설교는 계획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장은 있는 부분이니깐 바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운동장 같은데서 강당·체육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정 했다 이런 말씀이고, 노후교실 개축은 내년도에 지금 당초에 계획이 있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조정해서 숫자는 조정할 수 있는데요, 숫자나 물량은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시설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올해에 개축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타당도 조사 등등 하려면 아직까지 밀렸다고 한다면 세 번째, 체육관입니다.

강당 이렇게 엄청난 이자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사실 체육관은 권장시설이거든요, 물론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좋아요,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시설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자를 주고서라도 빌려서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어야 된다고 할 때는 꼭 지을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어야 되겠거든요. 우선 순위를 꼭 지어야 된다면 40%를 지으라고 한다면 40%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더 찬찬히

여유를 보고 추세를 봐 가면서 지어도 되지 않느냐 꼭 이자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했더니, 어차피 40%로 하려는 28개인가 29개가 우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한해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해에 몰렸다가 몽땅 투자를 넣는다면 나중에 상환하는 해가 한해에 많이 몰려 가지고 더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해 오던 8,10,11,8개 이런 정도는 해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갈등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배 이상 사실 액수로만 2,300억이지만 복리 하면 더 엄청난 거거든요. 이러한 돈을 들여서 다른 불요불급한 시설에 투자가 그만치 안되면서도 다목적교실인 체육관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타 시·도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좌우간에 우리 내주신 부분 전면적으로 금년에 재검토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내년도 계획 잘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진옥경 위원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우리 공식적으로 준 바가 없다고 하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국민들은 그렇게 안압니다. 신문보도가 딱 나면 약 강당 짓는구나, 야 교실 짓는구나 이렇게 알지 교육위원, 도의원들이

통과된 건 여벌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우리 예산사업에 많은 것들이 해당학교 교장이 우리 위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라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통과 전에 뭐가 어떻게 되는 부분 벌써 다 교장들하고 자기들이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실이나 교장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올렸으니까 그러나 됐다 이거예요, 예산 짓는다 이거예요. 이런 예를 비밀비재하게 우리 듣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교육위원회 한 푼어치 자존심이나마 지켜줄 수 있겠는가 벌써 신문보도 다 나고 해당학교 교장, 행정실장 다 알아서 구두약속이 되는 모양이죠, 메시지를 주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리국장님 공문이나 또 관계관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당부를 드려서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막중한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아직 도의회도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분개했던 사항이에요. 간담회에서 문의하고

이래서도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정도의 서두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두 번째 시급한 대폭 조정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교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네요. 나누어 되나요, 목조니, 철근조니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벽돌조나 목조나 철근조나로 구분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2007년도까지의 내구연한이 오랜된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물론 내구연한이 오래 됐더라도 40년 이상 됐더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겠고 내구연한이 뭐 불과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급해서 이 BTL사업에 낄 수 있도록 들어있더라구요, 여기 지침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랜 순서가 그래도 앞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음 해에 우리 증·개축부분이 물론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심의도 하고

아까 심의위원회 선정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동료 위원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심의위원회들이 증·개축에 내년도 2006년도 증·개축할 대상학교 선정이라든가 할 적에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참고로 알고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자료를 읽다보니까 그 40%라고 하는 강당의 문제가 자꾸 교육부의 40%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금년도 BTL사업 투자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좀 안맞아요, 데이터표를 가지고 계시면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07년까지 1단계 물론 2007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별 주요 투자목표가 있는데 거기 초·중등학교 체육관 보유량에서 좌측에는 현재 상태입니다. 좌측에 현재 상태에는 20.5% 전국 퍼센트예요. 20.5%에 2,160개교 근데 우리 도는 33%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도는 체육관 보유율이 33%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면 우리 도의 체육관 보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20.5%인데 우리가 33%니까 우측에 보면 1단계 계획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5.9% 2,873개, 25.9%를 목표로 하는데

자꾸 그 보고나 답변에는 40%라는 얘기가 튀어나와서 이 40%가 맞는 것인지 25.9%가 교육부가 생각하고 BTL사업이 하는 목표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와서 40%가 맞겠죠,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이게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바로 안 되면 다음에, 바로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월달에 BTL사업 유치계획에 보시면 초·중등학교 체육관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목표가 체육관이 2004년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2007년까지 40%로 하겠다는.....

● 위원장 송대헌

교육부의 공문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위원장 송대헌

이 자료하고는 서로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교육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걸 기획예산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문으로 거기 드렸던 것하고는 갭이 있

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도의 체육관의 현재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을 하나 확인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됐습니다.

상위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그만치 행정을 잘했다는 것이지 절대로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에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됐던 부분도 풀었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자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시설과장님 말을 인용했는데 다른 뜻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을 하셔도 좋고 토를 달아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맞으면 맞다고 해도 좋고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다목적교실 보유율에 관해서만은 2007년 목표가 40%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하

고 교육부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이나 선정위원회나 혹은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하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시킬 수는 없거든요.

● 진옥경 위원

아니 BTL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사업이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시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학교예산 같은 경우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에 대한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하고 서두른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산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을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진옥경 위원

종전에 해 왔던 학교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식이 새로이 바뀌었을 때는 그 새로운 방식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체제를 맞추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것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다목적교실도 많이 지어주고 또 교실도 많이 충분하게 해서 특별교실이라든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소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 개의 뭐랄까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업자들이 몰려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냈을 때, 그러면 급식의 최저단가 입찰제로 했을 때 급식의 질이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지만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선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 많은 예산들을 어쨌든 부풀려 가지고 올려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온다는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여쭙보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내려온다 하면 내려오는 시점은 언제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예산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시점들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감안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1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시작한 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타 시도 교육청 형편을 봐도 저희들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사업이 고시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고시하고서 그뒤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이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간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지 아직 확정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이 오는 대로 인적구성이라든가 적정하게 구성을 하고, 또 평가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0%이상 40%를 하면 1점이고 49%이상은 10점입니다. 10점이 만점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부분이 설계가 250점, 시공이 50점, 유지·관리 130점, 서비스 60점, 출자자 구성이 60점, 창의성이 10점, 정부지급금 4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점으로 배점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이 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요것이 바로 지침이 올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들도 저한테 주시고 일단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제181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채무 부담 행위액은 1,440억 8,476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이기수,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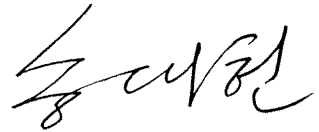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7. .

위원장 송대헌



(별첨 1)

豫算·決算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18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05. 6. 27.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6. 28. (화)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2)

서 면 답 변 서

1.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외부지원 내역 및 집행절차
(이기수 위원)
2. 홍보비, 전광판시설 부대경비 내역(이기수 위원)
3. 명시·사고이월사업비 비교표(2003, 2004)
(송대현, 이상일 위원)
4. 은행별 환매채 및 CD 금리비교(이상일 위원)
5. 영재교육센터운영 집행내역(성영용 위원)
6. 노후교실 현황(진옥경 위원)

질의 · 답변서

이기수 위원

소관과 : 평생교육체육과

질의

1.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외부지원 내역 및 집행절차

답변

- 2004년도 사회단체에서 급식지원비로 성금 접수받은 현황은
 - 6. 25. 선프라자(대표 김요식)에서 농산물상품권 31,500천원을 기탁 받아 여름방학 중 결식우려 학생 866명에게 직접 지원하였고,
 - 6. 25 월드비전 충북지부에서 34,439천원을 기탁 받아 제2회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4 급식지원 사회단체 성금 접수 현황

일 시	단 체 명	기탁금액 (단위:천원)	비 고
6. 25.	선프라자 (김요식)	31,500 농산물 상품권	여름방학중 결식학생 지원 (866명)
6. 25.	월드비전 충북지부	34,439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행
계		65,939	

질의·답변서

이기수 위원

소관과 : 공보감사담당관실

질 의

2. 홍보비. 전광판시설 부대경비 내역

답 변

- 다목적 멀티비전 전광판
 - 전기요금 월 : 1,400천원

- 빌보드형 홍보판
 - 전기요금 월 : 200~300천원

- 교육홍보 광고료
 - 예산액 : 25,200천원
 - 집행액 : 15,820천원
 - 잔 액 : 9,380천원
 - 집행내역
 - 일간지 15,020천원
 - 월간지 800천원

- 교육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 별첨

2004 충북교육홍보 현황

인론사명	계재일시	부서	개재내용	광고금액	비고
충청일보	3.22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세계속 충북인재육성 -충북교육 3년이내 발전. 변화체감 역량 집중	2,000,000	
"	12.2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중부매일	3.29	중등교육과	모두가 성공하는 교실수업으로 사교육비 경감	2,000,000	
"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한빛일보	3.26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한발앞선 e-Learning체제 활용으로 지역간 교육적차 해소에 역량 집중	2,000,000	
"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1,100,000	
충북경제	3.29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충청리뷰	3.27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충청문화	3.27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800,000	
내일신문	3.3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660,000	
건설교통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충북뉴스	3.29	중등교육과	교실수업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1,100,000	
"	12.3	기획관리과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 -2004 주요추진실적 및 2005역점추진사업	660,000	
합 계				15,820,000	

질의·답변서

송대헌, 이상일 위원

소관과 : 학교운영지원과

질 의

1. 명시·사고이월사업비 비교표(2003.2004)

답 변

연도별 이월액 및 건수

(단위:백만원)

연도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2001	116	57,259	91	33,939	207	91198	
2002	26	28,262	94	32,248	120	60,510	
2003	19	18,928	76	38,583	95	57,511	
2004	36	35,886	15	11,630	51	47,516	

질의·답변서

이상일 위원

소관과 : 학교운영지원과

질의

2. 은행별 환매채 및 CD 금리비교

답변

□ 은행별 환매채 및 CD금리 비교표

은행명		30일	60일	90일	180일	360일
농협중앙회	환매채	2.90	2.95	2.95	3.05	3.15
	CD	2.90	2.95	2.95	3.05	3.25
우리은행	환매채	2.40	2.50	2.50	3.00	3.20
	CD	2.90	3.00	3.10	3.30	3.40
외환은행	환매채	2.40	2.50	2.60	2.80	3.10
	CD	2.40	2.50	2.60	2.80	3.10
기업은행	환매채	2.80	2.95	2.95	3.05	3.20
	CD	2.80	2.80	2.80	3.05	3.20
제일은행	환매채	2.80	2.80	3.10	3.20	3.50
	CD	2.90	2.90	3.20	3.30	3.60
조흥은행	환매채	2.70	2.90	2.90	3.00	3.40
	CD	2.70	2.90	2.90	3.00	3.20

질의·답변서

성영용 위원

소관과 : 교육과학연구원

질 의

1. 영재교육센터운영 집행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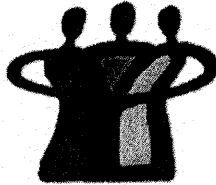
답 변

□ 영재교육센터 운영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세 목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일반운영비	컴퓨터,영어영재	16,900,000	3,235,400	13,664,600	1.교재 복사 사용함으로 원고료 미집행 2.본원 및 충북에듀넷 탑재된 도서 및 S/W활용으로 자료구입 미집행 3.본원 기 교재 복사 사용으로 인쇄비 미집행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500,000	1,314,260	185,740	
운영수당	컴퓨터,영어영재	15,150,000	13,631,710	1,518,290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23,660,000	21,445,000	2,215,000	
합 계		57,210,000	39,626,370	17,583,630	

진옥경 위원

노후교실 현황
(서면 답변서)



(www.cbe.go.kr)

충청북도교육청

내구연한 경과 노후교실 현황

건물구조별	건물동수	건물면적(m ²)	비 고
목조	2동	482.51	
벽돌조, 석조	107동	48,358.71	
철콘조	1동	992.25	
계	110동	49,833.47	

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조 : 목조 - 1987년이전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구조	비고
1	1930	04청원	부강초	교사동	다목적실	99.17	목조	
2	1959	04청원	강외초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383.34	목조	

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비고
1	1936	01청주	대성고	교사동	본관교사동	1566.28	문화재지정
2	1940	01청주	석교초	다목적교실	강당	426.00	
3	1940	01청주	일신여중	교사동	미술실	75.00	
4	1940	01청주	일신여중	교사동	음악실	75.00	
5	1940	01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생활관)	580.00	문화재지정
6	1940	01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및특별실(관리실)	544.00	문화재지정
7	1940	01청주	일신여고	교사동	별관교사및특별실(관리실)	495.00	문화재지정
8	1940	02충주	충주중	다목적교실	강당	343.00	
9	1948	09괴산	괴산중	교사동	별관교사동	725.06	
10	1954	01청주	대성여중	다목적교실	강당	454.21	
11	1955	09괴산	괴산중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396.69	
12	1956	09괴산	명덕초	교사동	다목적실	396.00	
13	1957	02충주	단월초	교사동	다목적실	265.00	
14	1957	08진천	진천중	다목적교실	구강당	397.00	
15	1961	02충주	가흥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405.00	
16	1961	09괴산	청천중	교사동	별관	165.00	
17	1962	04청원	문의초도원분교	교사동	별관동	330.00	
18	1962	09괴산	감물초	교사동	후관교사동	521.40	
19	1963	02충주	충주여중	다목적교실	강당동	671.07	
20	1963	02충주	충원고	다목적교실	구강당	175.00	
21	1964	01청주	대성초	다목적교실	강당	514.02	
22	1964	09괴산	도안초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241.00	
23	1964	09괴산	추산초	교사동	후관교사동	412.50	
24	1965	02충주	능암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617.20	일부미경과
25	1965	02충주	야동초	교사동	유치원동	149.00	
26	1966	01청주	청주여중	교사동	별관교사	158.68	
27	1966	04청원	남일초두산분교	교사동	자료실동	173.30	
28	1966	10음성	하당초	교사동	별관	247.50	
29	1967	01청주	우암초	다목적교실	강당	243.00	
30	1967	02충주	수회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79.34	
31	1967	03제천	화당초	교사동	교사(별관)	597.00	
32	1967	05보은	세중초	교사동	과학실	165.00	
33	1968	02충주	달천매현분교	교사동	별관교사동	338.00	
34	1968	02충주	세성초	교사동	유치원동	165.00	
35	1968	03제천	남천초	교사동	교사(별관)	1644.66	일부미경과
36	1968	05보은	수정-삼가	교사동	교실	413.00	일부미경과
37	1968	05보은	보덕중	교사동	다목적실	248.00	
38	1968	06옥천	청성능월	교사동	별관교사동	247.00	
39	1968	06옥천	이원중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238.00	
40	1968	07영동	심천초	교사동	다목적실	222.30	
41	1968	09괴산	철성-외사	교사동	후관교사동	413.22	
42	1968	09괴산	청천-신월	교사동	별관교사동	330.00	

(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비고
43	1969	01청주	주성중	다목적교실	강당	719.00	
44	1969	01청주	청주여상	교사동	본관교사동	1013.00	일부미경과
45	1969	02충주	노은중	교사동	본관	1286.11	일부미경과
46	1969	06옥천	옥천중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584.00	
47	1969	09괴산	철성-외사	교사동	본관교사	297.23	일부미경과
48	1969	11단양	가곡-대곡	교사동	교실	165.29	
49	1970	02충주	수회초	교사동	유치원동	160.46	
50	1970	02충주	능암초	교사동	본관교사동	180.00	
51	1970	02충주	야동초	교사동	후관2동	243.00	
52	1970	02충주	달천초	교사동	유치원사	162.00	
53	1970	03제천	의림초	다목적교실	체육관	582.00	
54	1970	04청원	강외초	교사동	실습동	81.00	
55	1970	04청원	동화초	교사동	별관동	169.30	
56	1970	05보은	내북중	교사동	교사	1172.40	일부미경과
57	1970	05보은	회인중	교사동	본관교사	1230.00	일부미경과
58	1970	06옥천	삼양초	다목적교실	다목적교실동	569.00	
59	1970	06옥천	증악초	교사동	교사	991.72	일부미경과
60	1970	07영동	미봉초	교사동	후관교실1	410.80	
61	1970	07영동	미봉초	교사동	후관교실2	407.50	
62	1970	07영동	상촌중	교사동	본관	1692.80	일부미경과
63	1970	07영동	부용초	교사동	교실	323.90	
64	1970	07영동	정수중	교사동	교실	504.36	
65	1970	08진천	문상초	교사동	본관교사	887.50	일부미경과
66	1970	09괴산	백봉초	교사동	본관교사	488.40	일부미경과
67	1970	09괴산	철성중	교사동	본관교사동	1876.00	일부미경과
68	1970	11단양	가곡초	교사동	후관동	248.00	
69	1971	01청주	내곡초	교사동	교실	1072.80	일부미경과
70	1971	01청주	중앙초	교사동	교사	746.00	
71	1971	02충주	야동초	교사동	후관1동	161.00	
72	1971	02충주	충주여중	교사동	실습소동	440.80	
73	1971	04청원	강외초	교사동	본관동	356.40	일부미경과
74	1971	04청원	미원초금관분교	교사동	본관동	324.00	
75	1971	04청원	수성초구성분교	교사동	유치원동	82.64	
76	1971	04청원	옥포초	교사동	본관동	556.57	일부미경과
77	1971	05보은	동광초	교사동	다목적실	162.00	일부미경과
78	1971	06옥천	동이우산	교사동	별관교사동	165.28	
79	1971	07영동	황간초	교사동	교실	161.90	
80	1971	08진천	삼수초매산분교	교사동	유치원사동	81.00	
81	1971	08진천	덕산중	교사동	기술실	66.00	
82	1971	09괴산	문광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521.00	
83	1971	09괴산	송면초	교사동	유치원	82.60	일부미경과
84	1971	09괴산	소수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383.47	
85	1971	11단양	별방초중	교사동	교실	649.68	일부미경과
86	1972	04청원	옥산초소로분교	교사동	본관동	162.00	일부미경과

(구조 : 벽돌조, 석조 - 198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비고
87	1972	04청원	행정초	교사동	본관동	477.90	일부미경과
88	1972	08진천	만승초	교사동	본관교사	1280.00	일부미경과
89	1972	09괴산	철성초	교사동	본관교사	180.00	일부미경과
90	1972	09괴산	보광초	교사동	본관교사	784.80	일부미경과
91	1972	11단양	가곡초	교사동	별관동	82.64	일부미경과
92	1973	05보은	보은자영고	교사동	과학실	162.00	
93	1974	06옥천	청성초	교사동	교실	880.45	일부미경과
94	1975	02충주	산척중	교사동	가사실	89.30	
95	1975	05보은	보은여고	교사동	별관교사	372.00	
96	1975	05보은	보은자영고	교사동	멀티미디어실	200.30	
97	1975	07영동	황간중	교사동	교원편의실	33.05	
98	1975	09괴산	연풍초	교사동	본관	860.05	일부미경과
99	1976	06옥천	안남초	교사동	유치원사동	186.00	
100	1977	08진천	이월중	교사동	후관교사	945.80	
101	1977	09괴산	문광초	교사동	별관교사동	33.00	
102	1978	06옥천	청산고	교사동	다목적실	161.90	
103	1979	03제천	제천디지털고	교사동	음악실	66.10	
104	1979	05보은	보덕중	교사동	본관교사	1685.00	일부미경과
105	1980	02충주	충주고	교사동	실습실	66.00	
106	1981	04청원	남일초	교사동	본관	239.00	일부미경과
107	1981	10음성	원남초	교사동	유치원사	91.08	

건축년도별 노후교실 현황

(구조 : 철콘조-1962년이전 건물)

번호	건축년도	지역별	학교명	구분	건물명	건물면적	구조	비고
1	1959	07영동	영동인터넷고	교사동	본관교사동	992.25	철콘조	

